

고려의 대외교역에 대하여

나 민 수

고려는 500년을 이어오면서, 여러 나라들과 외교사절을 교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과 교역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고려의 교역품 변동을 통해 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역형태를 공교역, 공사교역, 사교역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교역대상국은 중국의 5대 제국, 송, 요, 금, 원 그리고 명나라로 한정하였다. 교역형태별 그리고 교역대상국별로 교역품목을 비교하여 보았는 바, 기본자료는 『고려사』, 『중국정사 조선전』에서 인용하였다.

공교역품의 내용은 초기의 예물 중심에서 점차 실질가치를 중시하는 금은제품 중심으로 바뀌었고 수량도 많아졌으며 기술도 보다 정교해진 것으로 보여졌다. 공교역품 중 옷감류인 모시베와 삼베, 먹거리류인 인삼은 고려 전 기간을 통하여 주된 교역품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공사교역품의 내용은 교역대상국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 바, 5대국가에는 동, 송에는 은, 금에는 금은제품과 모시베, 원에는 금은제품과 각종 가죽, 명에는 금, 은, 모시베, 말이 주로 수출되었다.

사교역품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적어서 어떤 경향을 찾기 어려웠으나, 은과 모시베, 삼베를 수출하였으며 국경 연접지역에서는 곡물과 농우 등을 수출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려왕조의 전 기간을 통하여 경제력의 신장과 기술적 발전은 감지할 수 있었으나, 교역품의 구조적 변동은 입증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비중이 컸을 사교역품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교역품의 구조적 변동을 살필 수 있으리라 본다.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 아파트 222동 1104호, 138-151(자택).

본 연구는 2000년 12월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효정 이순탁 교수 기념 강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머 리 말

고려(918~1392)와 사신왕래가 있던 나라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송, 여진, 거란, 몽고, 철리국, 일본, 유구, 명 등 13개국이었다.¹⁾ 이들 나라들과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생성과 소멸의 연대에 따라, 문화적으로 주고 받아들이려는 요망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의 우열에 따라 외교사절과 물자교역의 내용과 빈도가 달리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고려는 475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왕통을 이어 온 나라로서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안정성을 이룰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5대와 송, 거란(요), 여진(금), 몽고(원) 그리고 명나라 등으로부터 이어가며 간섭을 받고 섬겨야 하였던 불안정한 나라였다.

5대와 송을 약 70년간 섬긴 후 거란, 여진, 몽고로부터 약 100년 간격으로 무력침공을 받아 그들의 간섭하에서 그들을 섬겨야 하였던 고려는 그 동안 어떠한 발전이 있었던가를 대외교역면에서 찾아보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본다면 고려의 대외교역면에서도 발전의 흔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흔적을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느냐 함이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대외교역품목의 변화에서 발전의 흔적을 찾아볼 것이며, 방법은 「고려사」²⁾, 「중국정사 조선전」³⁾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고려사」와 같은 편년체의 왕조사에서 과연 교역품에 관한 자료가 역사발전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러니와 이를 일관된 역사방법론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필자의 한계 또한 자료의 문제 이상의 문제임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이 외에도 흉료국, 대식국, 동진국, 모라국, 불라국 등에서 고려에 사자를 보낸 바 있었으나 고려에서 이들 나라에 사자를 보낸 바는 없었다.

2) [9], 복역.

3) 국사편찬위원회 [8].

그리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후퇴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본다. 즉, 개인의 일생이 주위환경과 사귀는 벗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의 변화과정도 상대적으로 되는 주변국가의 상황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종주국과 번국이라는 종적 관계가 횡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았던 고려의 상황하에서는 싫든 좋든 종주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외부의 힘에 의한 역사의 후퇴도 생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제Ⅱ장에서 교역의 형태를 정의하고, 제Ⅲ장에서 교역의 내용을 5대와 송, 거란(요), 여진(금), 몽고(원) 그리고 명나라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칠리국, 일본, 유구와의 교역은 그 양과 품목이 적었으므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요약과 결론을 도출한다.

Ⅱ. 교역의 형태

재화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현상을 교역 또는 무역이라고 한다면 국가간에 사람의 왕래가 있을 때면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교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국가간에는 자연적 여건과 사회적 조건이 각기 다르고 기술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가 서로 다르기에 교역이 일어난다. 교역의 형태를⁴⁾ 구분하기 위하여 교역주체를 국왕 또는 국가, 개인 또는 상인 두 주체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왕 또는 국가에는 왕실의 가족, 예를 들면 왕후, 상왕, 태왕후, 왕세자, 왕세자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개인 또는 상인에는 사적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관리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역주체의 2분법은 자료의 모호성 등에 따른 편의적 방법이지 정밀한 분석방법은 아니다. 중세국가

4) 교역의 종류는 관무역, 부대무역(사신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 공인무역(호시, 개시, 책시 등 공인된 일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밀무역 등으로 나뉜다(김신 [2], 여·원 양국의 무역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무역, 국가와 개인 간의 무역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민간무역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장동익 [3], 141쪽).

4 나 민 수

에서도 왕실경리와 국가경리는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자료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자료 1> 1354. 1. “원나라가 환자원사 김광수와 첨원 가라발피를 보내어 왕에게 저폐 1만 정, 금 1정, 은 9정을 주었다. 왕은 이것을 전부 국고에 넣었다.”⁵⁾

<자료 2> 1392. 3. “명나라 황제가 세자에게 준 금 2정과 은 7정을 도당에 내려 주어 국가경비에 충당케 하였다.”(4-561)

즉, 자료 1과 자료 2에서 왕이나 왕세자에게 준 예물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것이거나 왕실의 것이지만, 조정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에 보내어 나라살림에 보태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국왕과 왕실의 지출이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를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왕실의 경리와 국가경리를 합하여 공적 경리로 보기로 하였다. 이제 갑국과 그 왕, 을국과 그 왕과의 거래를 공교역이라 부르고, 갑국과 그 왕, 그리고 을국민과의 거래를 공사교역이라 부르며, 갑국민과 을국민과의 거래를 사교역이라 부르기로 한다. 갑국과 그 왕이 을국민과 거래를 할 경우 갑국의 입장에서 갑국과 국왕의 재화가 나가고 들어오므로 공교역의 성격이나 을국의 입장에서 개인의 재화가 나가고 들어오므로 사교역의 성격이다. 그러므로 공사교역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공교역에는 국가간의 공물의 거래, 국가간의 상거래, 왕실간의 예물거래가 포함된다. 국가간의 공물은 이른바 세공으로써 해마다 일정 물량을 바치는 것을 이르는데 고려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공물을 받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였지만, 이 물량이 『고려사』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예는 명나라에 대한 것뿐이다.⁶⁾ 외국의 경우에는 거란과 송과의 세공내역이 나타나 있다.⁷⁾ 고려와 몽고와의 관

5) [9], 북역, 4책 22쪽, 이하 4-22로 표기.

6) [9], 1379. 3. 명의 조서에 “명년부터는 금 100근과 은 1만 량, 양마 100필, 세포 1만 필씩을 매년 상례로 바칠 것이다.”(4-295)라 하였으나 양마는 1,000필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계에서도 세공에 대한 규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262년 12월의 몽고 조서에 “보낼 물건들은 규례에 따라 꼭꼭 바치어 처음 마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원토록 좋은 관계를 두텁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3-32)라는 부분이 있고, 1268년 2월에 왕온이 몽고에 사신으로 갔다와서 구두로 보고하기를 “모시의 질과 수량이 미치지 못하다고 질타를 받았다.”는 등이 이를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고려는 몽고에 대해 공물의 양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⁸⁾ 1355년 7월에는 원나라에서 무늬모시의 공납을 면제하여 주기도 하였다(4-30).

그러나 자발적인 조공관계에서는 조공품목과 수량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⁹⁾ 즉, 고려와 후진, 후주와의 관계 그리고 전기의 여진과 고려와의 관계에서 보면 토산물을 바치는 기록에서 품목과 수량이 명기되지 않고 있다.

왕실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예물의 교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실간의 예물은 왕의 즉위, 왕과 왕후 그리고 태자의 생일, 설날과 절일 등의 축하 때에 교환한다. 또한 왕실간의 조문과 문상의례에서도 예물과 부의금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왕실간의 예물교환에서 품목과 수량이 명확히 기록된 예는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토산물, 예물, 물품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가간의 상거래는 고려와 원, 명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가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거래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때 당시의 교역품간의 등가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교역은 갑국 정부가 을국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와, 갑국 정부(또는 왕)가 을국의 특정 개인(관원 포함)에게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그리고 준조세 성격의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갑국 정부가 을국 시장

7) 관남의 10현을 두고 거란은 송나라로부터 종전의 예로 은 30만 량과 견직 30만 필 이외에 매년 금과 비단 같은 폐백을 받고…영원히 화목하게 지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1-298).

8) 1232. 4. 몽고에 보낸 표문중 “…수달피 1,000장을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 …숫자를 채울 수 없고 겨우 977장을 보내니…”(2-547); 1262. 9. “좋은 구리 2만 근을 바치라고 하였는데…뜻외로 말하면 우리 나라 압록강 이남에서는 원래 산출되지 않는 것이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이다.”(3-30); 1384. 5. “판중부시사 김진의를 요동으로 파견하여 세공으로 말 1,000 필을 보내고 금과 은은 우리 나라의 소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복정 최연을 파견하여 황제에게 그 수량의 삭감을 요청하였다.”(4-363) 등이 나타나 있다.

9) 1277. 7. 검제조, 금채굴 그리고 인삼 바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3-176).

에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는 비록 일방 독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거래는 상호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상거래로서 등가교환에 보다 가까운 거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958년 후주의 관원이 비단 수천 필을 가지고 고려에 와서 동을 무역해 간 것(1-130), 1271년 7월에 몽고의 봉주경략사에서 명주 1만 2,350필을 가지고 와서 농우를 사갔다(3-97)는 것이 그 예이다. 갑국 정부(또는 국왕)가 을국의 특정 개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는 그 개인이 갑국 정부 또는 국왕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특별한 공헌을 하여 그에 따른 포상의 성격으로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진의 추장들이나 장군들이 토산물을 바치거나 예방을 하고 고려 조정으로부터 의복과 그릇을 받는다거나 고려의 관작을 얻는 경우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갑국 정부(또는 왕)가 을국의 개인에게 먼저 재화를 전내고 그 후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고려 조정에서 이른바 대국의 사신이나 장군에게 예물을 바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준조세 성격의 거래는 송의 상인들이 고려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던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사교역은 갑국의 개인과 을국의 개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갑국의 관원과(개인 자격으로) 을국의 개인과의 거래이며, 다른 하나는 갑국의 개인과 을국의 개인 간의 거래이다. 전자는 금이나 명과의 교역에서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갑국의 관원은 공공의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비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성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공교역의 세 가지 형태를 나누어 보면, 국가간의 공물거래를 A형, 왕실간의 예물거래를 B형, 국가간의 상거래를 C형으로 하고, 공사교역에서 갑국 정부와 을국 개인과의 거래를 D형, 갑국 정부와 을국 특정 개인과의 거래를 E형 그리고 갑국 정부와 을국 상인과의 준조세적 성격의 거래를 F형이라 하며, 사교역은 갑국 관리와 을국 개인과의 거래를 G형, 갑·을국 개인간의 거래를 H형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거래의 형태에 따라 거래대상이 다르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왕실간의 거래는 당연히 최고급 사치품이 거래될 것이고, 공교역인 국가간의 거래는 때에 따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상대국 시장

에서 구할 수 있을 경우 생기는 거래이며, 사교역에서는 일반 대중품이 거래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Ⅲ. 교역의 내용

1. 5대와의 교역

1) 5대와의 관계

중국은 주전충이 907년에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자립하여 후량(907~923)을 세운 이후, 후당(923~936), 후진(936~946), 후한(947~952), 후주(951~960)에 이어지는 5대 시대를 열었다. 이 다섯 왕조가 지배한 지역은 황하유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남쪽에는 오, 남당, 오월, 초, 남한, 민, 전촉, 후촉, 형남 등이 할거하면서 서로 싸웠고, 북쪽에는 북한이 웅거하고 있었다. 이들 5대 10국의 군주는 거의가 당조 말기의 절도사들이었다.

고려는 이들 다섯 나라에 차례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 5대의 왕조가 교체되면 먼저 공물을 바쳐 전국을 축하하고 그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며 왕위를 책봉받았다. 『고려사』에서는 고려의 사절을 보낸 횟수가 후량에 1회(923), 후당에 4회(926, 927, 932, 935), 후진에 3회(937. 1, 941, 944), 후주에 6회(952, 955, 955, 959 봄, 가을, 겨울)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보다 많았다. 즉, 중국측 자료로서 구 5대사에는 959년에 고려에서 후주에 자수정과 백수정을 보냈다는 기록만이 있고, 신 5대사에는 923년과 932년에 후당에 사신을 보냈으며, 959년에 후주에 사절을 보내 황동 5만 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958년에는 후주에서 고려에 사절을 보내 비단으로 동을 구입하여 간 기록이 있다. 그리고 송사에서는 951년과 955년에 고려사절이 후주에 조공한 기록이 있다.¹⁰⁾ 또한 남당에서도 고려에 세 번이나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나

10) 국사편찬위원회 [8], 256쪽.

〈표 1〉 고려와 5대 나라들과의 사절 교환

| 연월 | 사신명 | 나라 | 비고 | 자료 |
|----------|--------------------|----|-----------------------------|-------------------------|
| 923. 6 | 윤질(尹質) | 후량 | 사절로 갔다 돌아와서 500나한 상을 헌납 | 1-85 |
| 923 | 한신일(韓申一), 박암(朴巖) | 후당 | ? | [8]-256, [5]-65 |
| 925. 10 | 위신(韋伸) | 후당 | 토산물 바침 | [5]-70, 111 |
| 926. 12 | 장빈(張彬) | 후당 | 처음으로 당에 보냄 | 1-88 |
| 927 | 임언(林彦) | 후당 | ? | 1-91 |
| 928 | ? | 후당 | 고려 사신으로 와서 표올림에 답서양식 신라에 준함 | [5]-67~68 |
| 929. 8 | 장분(張芬)등 53인 | 후당 | 조공 | [5]-111 |
| 932. 3 | 왕유(王儒) | 후당 | 조공 | [5]-111 |
| 932 | 왕중유(王仲儒) | 후당 | 토산물 바침 | 1-102 |
| 932* | ? | 후당 | 고려왕을 대의군사로 책명 | [8]-258, [5]-68 |
| 933. 3* | 왕경(王瓊), 양소엽(楊昭業) | 후당 | 왕을 책봉하고 그릇, 비단을 보내 옴 | 1-101 |
| 935 | 형순(邢順) | 후당 | ? | 1-109 |
| 935. 8 | 김길(金吉) | 후당 | 청주에서 고려입공사 김길의 배가 연안 도착 보고 | [5]-70 |
| 936. 10 | ? | 후당 | 토산물 조공 | [5]-70 |
| 936. 12 | 형순(邢順) | 후진 | 조공 | [5]-112 |
| 937. 1 | 왕규(王規), 형순(邢順) | 후진 | 건국 축하 | 1-113 |
| 937. 1 | 왕규 | 후진 | 조공 | [5]-70 |
| 938. 6 | 유훈율(柳勳律) | 남당 | 조공 | [5]-75 |
| 939 | 유훈율 | 남당 | 방물 바침 | [5]-76 |
| 939* | 사반(謝攀) | 후진 | 왕을 책봉 | 1-114 |
| 939. 9 | 형순(邢順)등 92인 | 후진 | 토산품 가지고 내조 | [5]-70 |
| 940. 10 | 유극질(柳?質) | 후진 | 조공 | [5]-75 |
| 941 | 왕신일(王申一) | 후진 | 토산물 바침 | 1-114 |
| 941. 8* | 장증(張證), 사반(謝攀) | 후진 | 책명사로 보냄 | [5]-69 |
| 943. 9 | 왕신일(王申一) | 후진 | 조공 | [5]-70 |
| 944 | 한현규(韓玄珪), 김염(金廉) | 후진 | 왕위계승 통보 | 1-121 |
| 945. 12* | 범광정(范匡政), 장계응(張季凝) | 후진 | 책명사로 보냄 | 1-121, [5]-69에 범정, 장계응. |
| 951 | ? | 후주 | 사신 보내 조공 | [8]-263 |

| | | | | |
|---------|------------------------|----|---|------------------------------------|
| 952 | 서봉(徐逢)등 97인 | 후주 | 토산물 바침 | 1-129, [5]-70 |
| 952. 2* | 왕연, 여계빈 | 후주 | 책명사로 보냄 | [5]-69, 1-129에 953 년에 고려에 왔다 |
| 954. 10 | 왕융(王融) | 후주 | 조공 | [5]-70 |
| 955 | 왕융(王融) | 후주 | 토산물 바침 | 1-129 |
| 955 | 순질(筍質) | 후주 | 세종황제 즉위 축하 | 1-130, [5]-70에 995. 11 등급 축하 조공 |
| 955 | ? | 후주 | 사신 보내 조공 | 3-263 |
| 956* | 설문우(薛文遇) | 후주 | 왕을 책봉 | 1-130 |
| 958* | 한언경(韓彦卿), 김언영 (金彦英) | 후주 | 비단 수천 필을 가지고 와 동 을 무역해 감 | 1-130, 3-258 |
| 959* | 대교(戴交) | 후주 | ? | 1-130 |
| 959. 봄 | 왕공(王兢), 황보위광 (皇甫魏光) | 후주 | 양마, 의복, 활, 칼 등 바침 | 1-130, [5]-71, 959. 1 |
| 959. 가을 | ? | 후주 | 별서효경 1권, 월왕효경신의 8 권, 황령효경 1권, 효경자응도 3권 바침 | 1-130, [5]-71, 959. 8 |
| 959. 겨울 | ? | 후주 | 동 5만 근, 자수정, 흰수정, 각 각 2,000개 바침 | 1-131, [5]-71, 11, [8]-259 |
| 959* | 남당사 장료(章僚) | 남당 | ? | [5]-80, 82 |

주 : *는 중국측 사절임.

있다.¹¹⁾

그러나 개인문집인 청이록, 한원군서, 책봉원구, 유씨남당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¹²⁾ 몇 번씩 중복된 것을 포함하여 고려의 사절이 20회나 5대에 가고 이들 나라에서 5회나 사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¹³⁾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려는 5대 나라들에 30회 이상 사절을 보냈으며, 이들 나라에서도 10회 이상 사절을 보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사절이 오가는 과정에서 공교역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사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11) 장동익 [5], 75~76쪽, 80쪽.

12) 장동익 [5], 65~80쪽.

13) 장동익 [5], 111쪽.

2) 5대와의 공교역

고려와 5대 국가와의 공교역에 해당할 만한 거래는 고려측에서 토산물을 바친 것, 중국측 표현으로는 조공이었고, 중국측에서는 왕을 책봉하고 보내는 예물이 있었다. 고려에서는 거의 매년 토산물을 바쳤으나 그 품목과 수량이 나타나 있는 것은 5회에 불과하다. 즉 자료 3~7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수량이 나타나 있는 것은 3회뿐이다.

〈자료 3〉 929년 8월에 광평시랑 장분 등 52인을 보내어 사자상 은제향로, 구름과 별을 새겨 넣은 금장식 겹, 말, 금은으로 장식한 매피, 흰 모시, 흰 방석, 머리털, 인삼, 향유, 은장도, 목에 다는 방울, 잣 등을 바쳤다.¹⁴⁾

〈자료 4〉 945년 고려 국왕에게 보낸 칙서에 “당신이 보내 온 글월과 함께 다음의 물건들을 받았다.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일, 월, 용, 봉의 무늬를 넣어 짠 도포감 2벌,¹⁵⁾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용을 무늬 넣어 짠 침대요 2벌, 금별을 수놓은 가죽갑옷 2벌, 모직에 은별을 수놓은 가죽갑옷 2벌, 모직을 받친 쇠투구 4개, 모직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꽃과 새를 무늬 넣은 모직 다리싸개 4개, 각궁 4개,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용과 물고기를 무늬 넣어 짠 모직 활전대 4개, 가는 대화살 200개에서 100개는 금을 물렸고, 100개는 은을 물렸으며, 나무화살 200개,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구름과 용을 수놓은 화살통 4개, 금은으로 칼자루와 칼집을 장식하고 구름과 하늘을 가늘게

14) 장동익 [5], 111~112쪽.

15) [9]에는 ‘일, 월, 용, 봉을 수놓은 도포감 2벌’로 번역되어 있으나, 조효숙 [6]은 ‘일, 월, 용, 봉을 織成한 상의용단 2벌’로 하였다. 그러나 織成은 ‘무늬 넣어 짠’으로 번역함이 옳은 것으로 본다.

새겨 넣은 검 10자루, 그 중 두 자루는 금으로 장식하고 모직으로 된 칼집에 들어 있다. 금으로 장식하고 구름과 하늘을 가늘게 새겨 넣은 장도 10개, 금으로 짠 창 10개, 금으로 장식하고 모직으로 만든 칼집에 넣은 비수 10개, 금으로 칼집을 장식한 비수 10개, 가는 모시 100필, 흰 모직 200필, 가는 실로 짠 중마포 300필을 일일이 받았다.”(1-123). 또 고려 국왕에게 준 칙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당신의 글월과 함께 보내 온 물건들을 또 다음과 같이 받았다. 금으로 장식한 작자 6개, 모직 칼집에 넣고 금으로 장식한 검 6개, 금으로 장식하고 모직 칼집에 넣은 장도 10개,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꽃과 새를 수놓은 모직 다리짜개 2벌,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꽃과 새를 수놓은 모직 비단으로 된 안석 2벌,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짜고 꽃과 새를 수놓은 치마감 6벌, 도금한 매방울 20개, 붉은 바탕에 금은 5색실로 수놓아 짠 모직과 비단으로 된 칼집에 넣은 금으로 장식한 비수 10자루, 은자물쇠에 5색 끈을 달고 은미동에 은으로 전체 도금한 새매방울 20개, 은쇠사슬 미동 흰 모직 100필, 가는 실로 짠 마포 100필, 인삼 50근, 머리털 20근, 금으로 장식한 쇠가위 10개, 금으로 가늘게 새긴 가위 20개, 금으로 가늘게 아로 새긴 가위 10개, 은꽃을 가늘게 새겨 넣은 가위 20개, 금으로 덧마구리를 한 큰 칼 30자루, 은으로 덧마구리를 한 중치칼 50자루, 금으로 덧마구리를 한 작은 칼 50자루, 은으로 덧마구리를 한 작은 칼 100자루, 금으로 가늘게 아로 새긴 불쑥시개 낫 20개, 금으로 가늘게 아로 새긴 집개 20개, 향유 50근, 잣 500근을 각각 받았다.”(1-124)

〈자료 5〉 959년 봄에 좌승 왕극과 좌윤 황보위광을 주나라에 보내어 좋은 말과 의복, 활, 칼 등 속을 선사하였다(1-130).

〈자료 6〉 959년 가을에 사신을 주나라에 보내어 별서효경 1권, 월왕효경신의 8권, 황령효경 1권, 효경자용도 3권을 선사하였다(1-130).

〈자료 7〉 959년 겨울에 사신을 주나라에 보내어 구리 5만 근, 자색 수정과 흰 수정 각 2,000개를 선사하였다(1-131).

〈표 2〉 고려가 5대 국가에 수출한 공교역품

| | |
|--------|--|
| 왕실 용품류 | 도포감(2벌), 침대요(2벌), 안석(2벌), 치마감(6벌), 흰 방석, 매방울(20개), 새매방울(20개) |
| 금은제품류 | 은제향합, 은제향로 |
| 무 구 류 | 가족잡옷(4벌), 쇠투구(4개), 다리싸개(4개 + 2개), 각궁(4개), 활전대(4개), 화살통(4개) |
| 옷 감 류 | 모시베(100필), 흰 모직(100필 + 200필), 마포(100필), 중마포(300필) |
| 먹거리류 | 인삼(50근), 향유(50근), 잣(500근) |
| 기 타 류 | 작자(6개), 가위(60개), 각종 칼(220자루), 불낫(20개), 불집개(20개), 머리털, 구리(5만 근), 수정(4,000개), 서적(4종 13권) |

자료 3~7에서 공물의 형태를 취한 고려의 수출품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자료 3은 중국측 자료에 나타나 있는 고려의 조공품목이다. 여기에는 물품명만 있을 뿐 수량은 밝히고 있지 않다. 자료 4는 944년에 고려에서 사절을 보내 왕위계승을 통고하고 진나라가 거란을 격파한 것을 축하하였는데 이 때 예물로 가져간 물품과 수량이다. 이를 정리하면 도포감 2벌, 침대요 2벌, 가족잡옷 4벌, 쇠투구 4개, 다리싸개 4개, 각궁 4개, 활전대 4개, 화살통 4개, 대화살 200개, 나무화살 200개, 검·장도·쌍창 각각 10개, 비수 20개, 가는 모시 100필, 흰 모직 200필, 중마포 300필이다. 그리고 작자(형구) 6개, 검 6자루, 장도 10자루, 다리싸개 2벌, 안석 2벌, 치마감 6벌, 비수 10자루, 매방울 20개, 새매방울 20개, 흰 모직 200필, 마포 100필, 인삼 50근, 가위 60개, 각종 칼 220자루, 불낫과 집개 40개, 향유 50근, 잣 500근이다. 이들은 모두 공교역 A형의 수출품인데 자료 3~7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왕실 용품류, 금은제품류, 무구류 등은 왕실간의 예물 정도의 품목이고, 그 외는 고려의 특산품의 성질을 갖는 물품들로 보인다. 특히 자료 4의 공물은 옷감류를 제외하면 사치에 극한 왕실예물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물품에 대한 중국측의 평가도 좋았었다. 즉, “이제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조공절차를 이행하였는데 보배와 비단으로 무늬를

놓아 그 아름답기가 중국의 동포보다 우월하며 상자에 들어 있는 물건들은 모두가 진기하다. 그 중에도 병기는 예리하고 갑옷은 아름다워 어느 것이나 정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가히 당신의 정성을 알 만한지라 깊이 찬양하여 마지않는다.”(1-123)라고 칭찬하고 있다. 옷감류와 먹거리류는 고려의 특산물로서 일반 교역품의 성격을 갖는 품목들이다.

중국측의 5대 국가들은 불과 10년 안팎으로 나라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문물 제도가 정비될 사이도 없어서 사신교환 때의 예물도 대단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5대측에서 고려에 왕을 책봉하는 사절이 다섯 차례나 왔었으나 책봉예물이 기록된 것은 자료 8과 자료 9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자료 8〉 933. 3. “지금 사신인 태복경 왕경과 부사인 대부소경 양소업 등을 보내어…국서와 은그릇, 비단들을 별지 목록과 같이 보내니…”(1-104)

〈자료 9〉 945년(혜종 2년) 진나라에서 범광정과 장계응 등을 보내어 고려 국왕을 책봉하고 고려 국왕에게 준 죽책, 법물은 다음과 같다. 죽책 1벌 80쪽, 자색실과 땀은 실로 묶고 붉은 비단으로 거죽을 장식한 책갑 1개, 검은 칠판에 은실 입힌 금동자물쇠 2개, 고리 손잡이에 붉은 비단으로 안을 받친 책문 2쪽, 황색 능직으로 만든 겹수건 1개, 책뚜껑 3쪽, 황색 능직에 기름결은 겹수건 1개, 자색숙사 끈이 달린 드는 책상자판 2개, 자색실로 책상그물을 씌운 유화 책상덮개 1장, 다리를 은으로 싸고 모와 머리를 금으로 장식한 벽자목 책상 1개, 자색 능직으로 만든 책상보 1개, 자색 능직에 선을 두른 공무용 방석 1개, 책상 앞에 놓는 자색 능직 방석 1개(1-122~123).

자료 8은 후당에서 고려 국왕을 책봉하면서 예물로 은제그릇과 비단을 보낸 것이고, 자료 9는 후진에서 고려 국왕을 책봉하면서 보낸 예물이다.

이를 정리하면 죽책 1벌 80쪽, 책갑 1개, 금동자물쇠 2개, 책문 2쪽, 책뚜껑 3쪽, 책상자판 2개, 책상 1개, 책상덮개 1장, 책상보 1개, 방석 2개, 겹수건 2개

로서 책상 하나에 딸린 부수품들이었다. 거란의 병력을 끌어다가 후당을 멸하고 나라를 세운 지 10년 된 후진으로서는 생산력과 기술이 정비되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예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3) 5대와의 공사교역

5대 제국과의 공사교역에 관한 자료는 단 하나뿐이다. 즉, 자료 10은 후주에서 비단을 가지고 와서 고려에서 동을 사갔다. 이는 중국측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데, 후주에서는 동전을 만들기 위해 동을 사간 것이다. 앞의 자료 7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는 동 5만 근을 959년에 후주에 보냈으나 후주는 960년에 조광윤에게 나라를 내 주고 만다. 그러나 고려의 많은 사절이 5대의 여러 나라에 왕래하면서 벼슬도 받고¹⁶⁾ 예물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절의 수도 많았을 것이다. 939년 9월 형순을 대표로 하는 사절은 72명이었고, 951년 1월에 서봉을 대표로 한 사절은 97명이었다는 기록은 많은 인원이 사절단원으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공사교역 또는 사교역을 하였음을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자료 10> 958년 이 해에 주나라에서 상서 수부원외랑 한언경과 상연봉어 김언영을 보내어 비단 수천 필을 가지고 동을 무역해 갔다(1-130).

<자료 11> 959. 1. 고려 사신 왕궁, 황보위광 등이 명마, 도포감, 활, 검, 갑옷을 바치며 이들에 옷, 은띠, 그릇과 돈을 차등 있게 주었다.¹⁷⁾

5대와의 공사교역에서 고려의 수출품은 동이었고 수입품은 비단과 은그릇임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품목은 알 수 없었다.

16) 장동익 [5], 111쪽. "926년 1월에 고려 사신 한신일이 조산대부 시전중감의 벼슬을 받고, 박암이 조산랑 비서장의 벼슬을 받았다."

17) 장동익 [5], 71쪽.

4) 5대와의 사교역

5대 제국과의 사교역에 관한 자료는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사교역이 없었겠는가.

〈자료 12〉 923. 6. 복부경 윤질이 양나라에 사절로 갔다가 돌아와 500나한화상을 헌납하였다(1-85).

〈자료 13〉 934년 7월에 고려 선박 한 척이 등주해안에 이르렀는데 로기 이하 70인을 고을에 들어와 교역하게 하였다는 것과 같은 해 10월에 고려에서 사람을 청주에 보내어 교역하였다.¹⁸⁾

〈자료 14〉 고려 전주 왕대세가 지닌 깃발이 나부기는 모양으로 형산을 연출한 의니산을 오월왕 전숙(제위 948~978)이 구득하려 하였다.¹⁹⁾

자료 12는 후량에 사신으로 갔던 윤질이 그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500나한화상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헌납하였다는 것이다.

자료 13에서 보면 배 한 척에 70인이 타고 교역품을 실어나를 수 있는 규모 의 배로 고려의 상인들이 교역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14에서는 고려 상인이 5대 국가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오월에까지도 진출하여 교역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에서 938년과 939년에 유훈율이 남당에 사신으로 갔었다는 사실과 959년에 남당의 사신 장료가 고려에 보내졌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려가 남당과는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사』에서는 남당의 사신이 온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민간에서는 중원의 남쪽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기록이라 보겠다. 국가간의 외교관계 여하에 관계없이 민간인은 교역 목적이든 수도 목적이든 또는 공

18) 장동익 [5], 71쪽.

19) 장동익 [5], 89쪽.

부를 하기 위해서든 넓은 중원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5대 때에 중원에서 유통된 고려의 산물로는 신라 인삼, 고려 동, 계림지가 있었고 고려가 국산 물로 중원에 보낸 고려 동불 3개, 석순, 소목탑이 있었으며, 오월왕 전숙이 중국에서는 망실된 법화언구 20권의 불교서적을 상인을 통해 고려에서 사갔다는 기록 등이 있다.²⁰⁾ 한편 사교역을 통하여 5대와 10국에서 고려에 교역된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2. 송과의 교역

1) 송과의 관계

송(960~1279)은 960년에 거란군의 침입을 막으러 가던 후주의 장수 조광윤이 군사를 돌려 후주의 어린 황제(7세)로부터 선양을 받아 세운 나라이다. 조광윤은 지방 절도사나 군벌로부터 모든 병권을 회수하여 황제에게 모으고, 재정을 통일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국가기구를 개혁하였다. 그리고 이를 움직일 관료를 과거제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발하였다. 그리하여 주변국을 차례로 병탄하거나 복속시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 송나라는 1126년에 금나라에 밀려 황제가 사로잡혀 망하고, 남은 무리들이 남하하여 1127년에 남송으로 이어졌다. 남송도 150여 년을 이어 가다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 내지 못하고 1279년에 무너졌다.

고려는 5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송에도 적극적인 접근정책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즉, 후주의 자리를 이어받은 송에 바로 토산물을 바치고 그 나라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송에 신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가 요와 금의 간섭을 받으면서부터 송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때도 있었다. 고려에서는 994년 이후 20년간 사절을 보내지 않았으며 1021년부터 1071년까지의 50년간에도 사절을 보낸 기록이 없다. 그런가 하면 송에서도 992년부터 1068년까지 약 80년간 사절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긴 단

20) 장동익 [5], 89쪽, 91쪽.

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북송과 남송에 보낸 사절의 횡수라던가, 북송과 남송에서 고려에 보낸 사절의 횡수를 살필 때 남송과의 관계보다는 북송과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였다. 고려와 북송 간에는 각각 34회의 사절을 교환한 것이 『고려사』에 나타나 있다. 고려에서 남송에 사절을 보낸 것이 1160년대에 그쳤고 남송에서도 1130년대까지만 사절왕래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송나라 상인의 왕래는 두 나라간의 공식 사절왕래가 끊긴 기간에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남송시대에도 상인들의 왕래는 지속되었으나 북송시대에 비하여 왕래의 빈도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려와 송과의 왕래는 요나라와 금나라 때문에 뱃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절이 오고 가는 시기가 대체로 6~8월에 이루어지고 송나라 상인의 고려 도착도 80% 이상이 6~8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계절풍을 이용한 뱃길이 수월할 때를 맞춰 배를 운항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 송과의 공교역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에서 송에 예물이나 토산물을 보낸 것이 19회 기록되어 있다.²¹⁾ 한편 송사에는 고려에서 송에 조공을 보낸 것은 17회 기록되어 있다.²²⁾ 그러나 많은 사실들이 기록에 누락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은 황제의 즉위에 축하사를 보내지 않았던가 왕의 책봉을 받고도 사례사를 보낸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송에 보낸 토산물이나 예물은 공교역 A형의 교역품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교역품의 품명은 977년에 보낸 말, 갑옷과 병기(1-137), 1164년에 보낸 유기와 동기(2-349) 등 품목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다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도 있었다. 다음 자료는 품목과 수량이 기록된 예물 목록이다.

21) 고려사 세가에 962년, 965년, 972년, 977년, 983년, 990년, 1014년, 1015년, 1017년, 1071년, 1073년, 1076년, 1080년, 1081년, 1098년, 1108년, 1115년, 1124년, 1164년에 고려에서 조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2) 국사편찬위원회 [8]에 963년, 976년, 978년, 980년, 981년, 982년, 986년, 989년, 993년, 993년, 1003년, 1019년, 1030년, 1079년, 1085년, 1092년, 1132년에 고려에서 조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자료 15〉 977. 이 해에 왕자를 송나라에 보내어 좋은 말, 갑옷, 병기 등을 선사하였다(1-137).
- 〈자료 16〉 982. 사신 김권을 보내 와 금은실로 봉제한 모직 두루마기, 모직 요, 금은으로 장식한 칼, 활, 화살, 명마, 향약 등을 바치고 왕위계승을 요청.²³⁾
- 〈자료 17〉 993. (송나라 사신) 진정 등을 돌려보내면서 습의, 금대, 금기, 은기 수백 벌과 포 3만여 필을 보내면서 표문을 부쳐 사례(중-270).
- 〈자료 18〉 1014. 8. “윤징고를 송나라에 보내어 금실로 용과 봉무늬를 넣어서 짠 천으로 만든 안장과 복두, 용과 봉을 수놓아 만든 안장과 복두 각각 2개와 좋은 말 22필을 선사하니…”(1-205)
- 〈자료 19〉 1019. 9. 최원신 등이 대궐로 들어와 알현하고 모직 비단옷, 모직 비단요, 오칠갑, 금으로 장식한 긴 칼, 비수, 모직 비단 안마, 모시베, 약물 등 속을 바쳤다(중-275).
- 〈자료 20〉 1030. 원영 등 293명을 보내어…금그릇, 은장식도검, 안마, 향유, 인삼, 세포, 동그릇, 유황, 청서피 등 물건을 바쳤다(중-278).
- 〈자료 21〉 1071년 3월 민간 시랑 김제가 송에 가지고 간 글월과 예물에 대하여 1072년 6월 김제가 송나라로부터 돌아올 때 가져온 송나라 황제의 칙서에 “귀국 사신 김제가 가지고 온 물건들은 다음과 같이 받았다. 나의 정복 2벌, 누른 모직 란삼 1벌, 붉은 모직 편복 1벌, 무게 40량 중 되는 금요대 1개, 총무게 60량중인 금합 2개, 모직 록백 2개, 모직 접전대 2개, 무게 40량중인 금반잔 2벌, 무게 65량중인 금주전자

23) 국사편찬위원회 [8], 265쪽, 이하 중-265로 표기함.

1개, 무게 150량중인 금대야 1개, 붉은 모직 안석 6개, 누른 모직 안석 4개, 붉은 모직 보료 6개, 세궁 4개, 효자전 24개, 세축전 80개, 금으로 도금하여 모직으로 포장한 병기 2벌, 백은을 입혀 검은 가죽으로 포장한 병기 1벌, 금은으로 도금하여 흰 가죽으로 포장한 병기 1벌, 은으로 장식한 긴 칼 20자루, 세마 4필과 이에 따른 안장과 다래, 언치와 안장보료, 향유 20항아리, 잣 2,200근, 인삼 1,000근, 생중포 2,000필, 생평포 2,000필이 들어 있었다.”(1-400~402)

〈자료 22〉 1080. 3. 호부상이 예부시랑 등이 송에 바친 토산물 일부(가는 도중 태풍으로 유실된 것이 그의 절반이었다.) “나에 대한 사례로 보내 온 물품들, 어의 2벌, 금요대 2개, 금대야 1개, 금화은기 2,000량중, 무색 비단 100필, 무색 능직 100필, 생비단 300필, 생릉직 300필, 복두사 20매, 모자사 20매, 모직으로 꾸민 병풍 1첩, 용을 그린 휘장 2개, 대폭 종이 2,000장, 떡 400점, 금은으로 도금하여 가죽으로 싼 병기 2개, 세궁 4개, 효자전 24개, 세전 80개, 안장과 고삐 2개, 세마 2필, 산마 6필 등등을 잘 받았다.” 또 “보내 온 금합 2벌, 반잔 2벌, 주전자 1벌, 붉은 모직 안석 10개, 붉은 모직 보료 2개, 장도 20개, 생중포 2,000필, 삼 1,000근, 잣 2,200근, 향유(참기름) 220근, 안장과 고삐 2개, 세마 2필, 라전으로 장식한 수레 1체 등 물품을 받았다.”(1-428~429)

〈자료 23〉 1132. 4. 최유청, 심기 등을 보내와 금 100량, 은 1,000량, 능라 200필, 인삼 500근을 조공하였는데 최유청이 바친 것도 그의 3분의 1은 되었다(중-288).

자료 15~23은 고려에서 송에 보낸 공교역품인데 사신의 성격에 따라 품목과 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산물을 가지고 간 사행이 많았을 것임에도 그 수량이 나타나 있는 것은 자료 18, 21~23뿐이었다. 특히 자료 23은 공물일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자료들은 공물과 예물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21은 본문의 여러 가지 수식어는 빼고 품목명과 수량만을 기록하였다.

〈표 3〉 고려에서 송에 보낸 공교역품

| | 982 | 1019 | 1080 | 1071 | 1080 | 1132 |
|-----------|----------------|--------------------------|---------------------------------|---|---|-----------------------------|
| 왕실 용품류 | 옷, 보 료 | 옷, 보 료 | | 정복 2벌, 단삼 1 벌, 판복 1벌, 금요 대 1개, 모직 허리 띠 2개, 겹전대 2 개, 모직 안석 10 개, 모직 보료 6개 | 어의 2벌, 금요대 2개, 모직 안석 10 개, 보료 2개, 휘장 2개, 병풍 1첩 | |
| 금은 제품류 | | | 금그릇 | 금반잔 2벌, 금주전 자 1벌, 금대야 1개 | 금합 2벌, 금대야 1개, 반잔 2벌, 주 전자 1벌, 금화은 기 2,000량증 | 금 1,000량, 은 1,000량 |
| 무 구 류 | 칼, 활, 화살, 말 | 긴 칼, 비수, 산마, 칠갑 | 은장식 도검, 안장과 고삐 갖춘 말 | 세궁 4개, 효자전 24개, 세축전 80개, 긴 칼 20개, 병기 4 벌, 세마 4필 | 세궁 4개, 효자전 24개, 세전 80개, 긴 칼 20개, 금은 병기 2개, 안장과 고삐 4벌, 세마 4 필, 산마 6필 | |
| 옷 감 류 | | 모시베 | 세포 | 생중포 2,000필, 생 평포 2,000필 | 생중포 2,000필, 생직 300필, 생비 단 300필, 무색 비 단 100필, 무색 능 직 100필, 복두사 20매, 모자사 20매 | 능라 200필 |
| 먹거리류 | | | 향유, 인삼 | 향유 20항아리, 잣 2,200근, 인삼 1,000 근 | 향유 220근, 잣 2,200근, 인삼 1,000근 | 인삼 500근 |
| 기 타 | 향약 | 약 | 동그릇, 유 황, 청서피 | | 먹 400점, 대폭종 이 2,000장, 수레 1채 | |

자료 21과 자료 22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송에 보낸 공물 또는 예물이다. 1080년
에 가지고 간 물품은 풍량으로 태반이 유실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품목과 수
량에서 처음 의도하였던 것과는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송

에서 오랫동안 사절을 보내 오지 않다가 1078년에 사절과 예물을 보내 온 데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1080년에 예물을 마련했을 것이다. 이들을 표로 만들어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첫째, 예물의 품목과 수량에 일정한 틀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둘째, 1080년의 예물은 1071년에 비해서 가짓수가 증가하였으며, 셋째, 각종 비단과 대폭종이와 먹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078년에 송나라에서 보내 온 예물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의 생산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징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물 중 일반 교역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은 옷감류와 먹거리류일 뿐 금은제품류와 병기류는 예물용 공예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송에서 고려에 물품을 보낸 기록은 『고려사』에 총 15회 나타나 있다.²⁴⁾ 그러나 보낸 물품의 품목과 수량이 명확한 것은 991년의 대장경, 1022년의 4권의 책, 1101년의 신의보구방의와 태평어람 1,000권, 1118년의 5명의 의관, 1078년과 1079년의 자료뿐이다. 그 중 1079년 분은 고려에서 국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원과 약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보내 온 약재 목록이다.

<자료 24> 993. 2. 원중연에게 문거를 발급하여 환국시키도록 하고 (왕에게) 옷감 200필, 은기 200벌, 양 50마리를 하사하였다(중-272).

<자료 25> 1022. 5. 한조가 송나라로부터 귀국하였다. 이 때…성혜방, 음양이택서, 건흥력, 불교경전 한 벌을 왕에게 보냈다(1-229).

<자료 26> 1078. 6. 송의 국신사 간의대부 안도와 진목이 가져 온 물품 목록. 국왕의 옷 2벌과 이에 따른 비단 겹공복 하나, 비단 한삼 하나, 겹삼첩 하나, 비단 겹포두 하나, 비단 능백 하나, 능직 겹바지 하나가 딸

24) 고려사 세가의 991년, 1022년, 1072년, 1078년, 1079년, 1080년, 1101년, 1101년, 1103년, 1110년, 1114년, 1116년, 1118년, 1123년, 1128년 등이다.

렸고, 장화 1켤레, 허리띠 2개, 말 4필과 그에 따른 안장 언치, 가슴 걸이, 채찍 2개, 은그릇이 2,000량중, 동이가 10개, 뚜껑 있는 바리가 2벌, 여러 빛깔의 천금 100필, 꽃무늬 놓인 비단 100필, 굵게 짠 비단 100필, 소릉 200필, 꽃무늬 놓인 사 500필, 백초 2,000필, 별도로 보낸 것은 용봉차 10근, 행인으로 빛은 특별주 10병, 붉고 누른 록아 박판 10관, 붉고 누른 아저 10관, 붉고 누른 아필롤 10관, 용봉촉 20 쌍(1-418~421).

〈자료 27〉 1079. 7. “이제 왕순봉과 형조 등을 보내어…병을 치료하게 하고 겸하여 백 가지 의약품을 별지와 같이 보내니…”(1-425~426)

〈자료 28〉 1090. 다시 사신을 보내 와서 은기 5,000벌을 하사하였다(중-282).

〈자료 29〉 1101. 6. 왕가와 오연총이 송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런데 태평어람 1,000권을 보내 왔다(2-34).

1078년 6월에 송에서 국신사로 보내 온 사절이 가지고 온 물품은 왕의 의복류, 말 4필과 그에 따른 안장류, 금은제품류, 옷감류, 음료류, 악기류,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특색은 ① 아주 사치스럽게 장식하고 포장한 점, ② 병기류 대신 악기류가 포함된 점, ③ 차와 술이 특산물의 성격을 갖고 예물 품목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1078년의 송나라 사절은 근 80년 만에 보내는 사절이라는 점과 고려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예물과 토산물을 바친 데 대한 답례라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고려의 예물 내용보다 우월한 점을 찾을 수 없는 바, 황제국과 번국과의 차이에서인지 생산력과 기술력의 차이에서인지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과 〈표 4〉의 고려에서 송에 보낸 품목들과 대비시켜 보자. 1071년의 고려의 품목과 1078년의 송의 품목을 비교해 보면 금은제품류에서 고려는 금제품으로 세 가지를 채웠는데 송에서는 은제품류로 대신하였고, 옷감류에서 고려는 생포만으로

〈표 4〉 송에서 고려에 보낸 공교역품

| | 993 | 1078 | 1090 | 1128 |
|--------|---------|---|-----------|------|
| 왕실 용품류 | | 국왕의 옷 2벌, 비단 겹공복 1벌, 비단 한삼 1벌, 겹삼첩 1벌, 비단 겹포두 1개, 비단 능백 1개, 능직 겹바지 1벌, 허리띠 2개, 장화 1켤레 | | 의복 |
| 금은제품류 | 은기 200벌 | 은그릇 2,000량중, 동이 10개, 뚜껑 있는 바리 2벌 | 은기 5,000벌 | 금은기명 |
| 무구류 | | 안장 갖춘 말 4필, 채찍 2개, 농아박판 10관, 아적 10관, 아필롤 10관 | | 산마 |
| 옷감류 | 옷감 200필 | 백초 2,000필, 꽃무늬 농인사 500필, 소능 200필, 굵게 짠 비단 100필, 무늬비단 100필, 천금 100필 | | 잡색피륙 |
| 먹거리류 | | 용봉차 10근, 은행술 10병 | | |
| 기타 | 양 50마리 | 용봉초 20쌍 | | |

채운 데 비하여 송에서는 여러 가지 비단으로 채웠고, 고려의 무구류에 대하여 송은 악기류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물에 악기류를 포함시킨 것은 그 후에는 찾을 수 없다. 즉, 1103년(2-46)과 1110년(2-104) 그리고 1128년(2-207)에 보내 온 예물에는 다같이 의복, 피륙, 금옥, 기명, 활과 화살, 안장 갖춘 말 등을 보낸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표 3〉의 1080년의 고려의 품목과 〈표 4〉의 1078년의 송의 품목을 대비해 보면 악기류를 제외하면 고려의 품목이 더욱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송은 고려에서 공물이 올 때마다 이를 유사에게 넘겨 그 값을 평정하여 1만 겹을 주도록 하였는데 1079년부터는 공물의 값을 평정하지 않고 1만 겹을 정수로 삼도록 하였다(중-280). 따라서, 고려에서 공물을 보내면 그 값이 많은 적든 합사로 짠 비단 1만 겹을 고려에 보냈다.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 공물을 바치는 사신이 올 때마다 고려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다. 즉, “1022년 2월에 고려 사신 한조 등이 하직하고 귀국하자 구례와 같이 물품을 하사하였다.”(중-277) 함이 이를 말하여 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번국이 황제국과의 공물거래에서 득을 보는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송과의 공사교역

『고려사』에 송과의 공사교역에 관한 기록은 단 세 건만 나타나 있다.

〈자료 30〉 1078. 7. 사절(안도)이 돌아가려 할 때에 배에 다 싣지 못하여 자기들이 받은 물품들을 은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 왕이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요청을 들어 주게 하였다(1-422).

〈자료 31〉 1103. 10. 송나라 황제의 천녕절과 관련하여 태자를 시켜 봉은사에서 재를 올리게 하였다. 송나라 의관 모개 등이 이를 참관하였다. 그들에게 술과 예물을 주었다(2-49).

〈자료 32〉 1192. 8. 송나라 상인이 와서 태평어람을 바쳤다. 왕이 그에게 은 60근을 주고 이어 최선에게 명령하여 그 책의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였다(2-448).

자료 30의 경우는 약 80년 만에 대하는 중국의 사신이기에 조정과 왕실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며, 조정의 고관대작들도 개인적인 교분 관계를 맺으려고 많은 예물을 바쳤을 것이다. 거기에도 송의 사절인 안도라는 사람의 인품이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보다는 탐욕스런 기질이 강하여 얼마나 많은 재화를 끌어 모았던지 배에 다 싣지 못하여 은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E형 교역과 G형 교역이 겹쳐 일어난 교역이다. 중국의 사신이 모두 안도 같은 사람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사절이 오가는 가운데 공사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로 안도의 경우를 든 것이다. 자료 31의 경우는 송황제의 생일을 맞아 그를 축하하고 또한 그의 복을 비는 의식을 개경의 한 절에서 거행하는데 여기에 송에서 파견한 의관이 참관하였다. 이 의관도 중국에서 온 귀한 손님이기에 술과 예물로 대접하였다는 기록이다. 고려시대이나 지금이나 우리민족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각별하다. 그 손님이 외국사람일 경우 작은 교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료 32의 경우는 1192년 8월에 송나라 상인이 태평어람이라는 책을 바친 데 대하여 왕이 은 60근을 사례하였다는 기록인데, 이미 1101년 6월에 송나라 황제가 태평어람 1,000권을 보내 왔다(2-34)는 사실로 보아 귀중한 책인 것으로 보인다. 어찌하였든 일반인을 통하여 공사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예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 경우는 모두다 E형 교역이라 보겠다. 그리고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에 바치는 토산물과 예물들은 공사교역 F형에 속한다. 송과의 공사교역에서 어떠한 품목들이 그 대상이었던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비사회의 예물의 격에 어울리는 특산품, 명품들이 거래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규모는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즉,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간 사절의 인원과 상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공사교역을 통해 송에서 고려에 들여 온 상품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자료 33〉 1132. 4. 최유정, 심기 등이 와서 조공하였는데…이들에게 금대 2개를 하사하는 동시에 따뜻한 조서로 답하여 돌려보냈다(중-288).

〈자료 34〉 1136. 고려의 지첩관 김치규가 명주에 이르자 은과 비단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중-288).

자료 33과 자료 34에서 보면 공사교역에서 송은 은과 비단 그리고 금은대 등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4) 송과의 사교역

고려의 상인들도 중국에 진출하여 교역을 하였을 것이다. 9세기 전반기에 장보고가 닦아 놓은 해상 교역길을 송두리채 잊어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사』에는 고려 상인이 중국에서 교역하였다는 기록을 실지 않았다. “1170년 어느 날 배 수백 척이 송나라 해안에 이르렀는데…가 보니 고려 상인들의 선박이었다.”²⁵⁾는 것은 중국사람들의 백발 삼천장이라는 과장법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상선이 무리지어 교역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고려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관리에게 공물을 바치고 상품을 교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 상인들이 어떤 품목을 송에 내다 팔고 어떤 상품들을 사들여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226년에 중국 명주지방에 수입된 고려 상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놓았다.²⁶⁾

과 실 류 : 잣, 송화, 밤, 대추, 가얏, 비자, 은행

약 재 류 : 인삼, 사향, 홍화, 복령, 밀납, 세신, 산수유, 백부자, 무이, 감초, 방풍, 우슬, 백출, 원지, 강황, 향유, 자채

수공품류 : 은자, 청기, 동기, 쌍감도, 대포, 소포, 모사포, 주, 라두, 라전, 돛자리, 합심

기 타 : 령모, 피자, 호피, 칠

그리고 고려와 송과의 교역관계 자료만을 추려 놓은 것에서 보면,²⁷⁾ 귀금속류(금, 은, 동, 수은), 종이류(삼한지, 고려지, 계림지), 먹(조선묵, 명주묵, 순주묵), 붓(고려 성성모필, 황호필), 약재(곤포, 세신, 백부자, 마자, 오렷송, 송자, 송화), 부채류(고려화선, 습첩선, 고려선, 송선), 인삼류(신라인삼, 라삼, 고려삼), 피륙류(능, 포), 기타(은주발, 그림, 고려경) 등이 있으며 닭과 백두 등이 나타나 있으나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고려의 수출품은 다음과 같다.

25) 장동익 [5], 348쪽.

26) 장동익 [5], 123쪽.

27) 장동익 [5], 343~390쪽.

과 실 류 : 잣, 송화, 밤, 대추, 가얏, 비자, 은행 (7종)

약 재 류 : 인삼, 사향, 홍화, 복령, 밀납, 세신, 산수유, 백부자, 무이, 감초, 방풍, 우슬, 백출, 원지, 강황, 향유, 자채, 곤포, 마자, 오렴송, 닭, 백두 (22종)

수공품류 : 은자, 은주발, 청기, 동기, 쌍감도, 라두, 라전, 돛자리, 합신 (9종)

피 룩 류 : 대포, 소포, 모사포, 명주, 능직 (5종)

문방구류 : 붓, 먹, 벼루, 종이 (4종)

모 피 류 : 피각, 영모, 호랑이 가죽 (3종)

기 타 : 부채, 그림, 칠 (3종)

송과의 사교역은 두 나라 상인들 간의 교역, 즉 G형 교역, 두 나라 관리들 간의 사사로운 교역, 즉 H형 교역으로 이루어진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려의 고사에 의하면 매번 사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큰 시장을 이루고 온갖 물건들을 늘어놓고 진열하였는데, 붉고 검은 비단은 모두 화려하고 좋게 만들었으며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왕부의 것을 시기에 맞추어 점포에 진열하였으나 대체로 실제 백성들의 풍속은 그런 것은 아니다.”(『고려도경』, 76쪽)

위 글은 중국 사신이 고려에 도착하여 중국에서 사사로이 가져온 물품들을 고려 시장에서 거래한 예이나 고려 사신들도 중국 시장이나 고려 시장에서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고려사』에는 송나라 상인이 1012년부터 1288년 사이에 배를 타고 개경에 들어온 것이 130회 정도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인원은 5,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²⁸⁾ 송나라 상인은 두 나라 사이의 국교가 단절된 기간에도 계속 왕래하면서 교역에 종사하고 때로는 통신사의 역할도 하였다.²⁹⁾ 송나라 상인이 한 번에 오는 인원수도 11세기 중반에는 150명 내외이던

28) 황관중 [7].

29) 체세창이 황제즉위조서 전달(1128. 3), 오적이 명주공문 전달(1138. 3), 후림이 명주공문 전달(1162. 3).

것이 12세기 중반에 오면 300명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예를 들면, 1038년 147명, 1049년 153명이던 것이 1148년 344명, 1149년 327명, 1162년 364명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송에서 1085년 고려와의 무역에 대한 금령을 해제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교역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결과라고 보겠다.³⁰⁾

송나라의 많은 상선은 음력 6~8월 사이에 개경에 도착하였다. 그렇다고 다른 계절에는 상인들의 왕래가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055년 2월 한식날에 송나라 상인 섭적총등 87명은 오변관에서, 황중등 105명은 영빈관에서, 황조등 48명은 청하관에서, 탐라주 수령 고한등 150명은 조종관에서 각각 음식을 대접하였다.”(1-344)는 기록에서 보면 2월달인데도 240명에 달하는 송나라 상인이 개경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상인들은 먼저 고려 조정에 토산물을 바침으로써 준조세적인 G형 거래를 한다. 그 다음에 가져온 상품을 시장에서 팔고 가지고 갈 상품을 역시 시장에서 샀을 것이다. 즉, 주거래인 H형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송나라 상인들의 G형 거래에서의 거래품목은 일반적으로 토산물로 표기되어 있다. 구체적인 품명을 밝힌 것은 향로·약재(1076. 7, 1022. 8), 서적(1027. 8, 1087. 3, 1192. 8), 보물(1049. 8, 1064. 8, 1082. 8), 서각·상아(1054. 7), 꽃나무·진기한 풀(1120. 6, 1157. 7, 1163), 앵무·공작(1157. 7, 1163. 7), 침향(1163. 7) 등이다.

〈자료 35〉 1260. 10. 송나라 장사꾼 진문광등이 대부시 내시원의 수탈을 견딜 수 없어서 길가는 김인준에게 도중에서 신소하기를 “값을 주지 않고 명주실, 비단 등 6,000여 필을 빼앗아 갔으니 우리는 빈주머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3-23~24)

자료 35에서 보면 송나라 상인이 고려에 가져온 주상품에 비단과 명주실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단과 명주실은 H형 거래의 주품목 중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송나라 상인들이 12세기 초부터 급격히 증대되는 반면, 준조세 성격의 토산품을 바치지 않고 있다. 기록의 잘못인지 제도의 변화인지 또는

30) 황관중 [7].

도강들의 힘이 강해진 결과인지도 규명해 볼 만한 과제라 본다. 그리고 13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남송마저 원나라의 압박을 받게 되어 송나라 상인이 고려의 관리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은 “1205년 8월에 송나라 상선이 예성강을 출발하려 할 때 고려의 관리가 금지령을 범한 송나라 상인 수명을 발견하여 매를 혹독하게 쳤다.”(2-480)는 기록에서도 읽을 수 있다.

3. 거란(요)과의 교역

1) 일반적 관계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은 922년부터 1110년까지 190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에서 거란에 사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995년부터이며 거란에서도 986년부터 사절과 군사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계는 약 120년간 지속되었다. 즉, 922년 2월에 거란에서 낙타와 털로 짠 천을 보내 온 후(1-84) 약 60년간 이렇다 할 거래관계가 없다가 986년에 군사를 보내 화친을 청하였으나 고려측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993년 8월에 거란군이 국경지방에 침입한 후에야 고려에서 방어군을 보낸 것이다. 고려군은 거란군과 싸웠으나 물리치지 못하고 서회로 하여금 화친을 맺게 하였다. 994년 3월에는 거란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995년에는 두 차례나 사절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으며, 996년 3월에는 거란으로부터 왕이 책봉을 받았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에서 사절을 약 140회 정도 보냈으며, 거란에서도 약 200회나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실제보다 적은 수치일 것임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다. 고려에서 보내는 정기적인 사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보내는 문후사, 거란왕의 생일 축하사, 태후의 생일 축하사, 새해 축하사, 거란에서 보내 온 고려왕의 생일 축하사에 대한 답례사, 그리고 토산물을 바치는 진봉사 등 연 9회였다. 그러다가 1023년부터는 봄과 여름의 문후사는 천령절(당시 거란왕의 생일) 축하사와 함께 오고, 가을과 겨울의 문후사는 태후의 생일 축하사와 함께 오도록 거란측에서 요청함으로써

5회로 줄었다. 부정기적인 사절로서는 거란국과 거란왕실의 경사에 축하사, 거란국과 거란왕실에서 고려와 고려왕실에 베푼 일에 대한 사은사, 거란왕실의 상사에 대한 조제사, 그리고 외교교섭사 등을 보냈다. 거란에서 고려에 보내는 정기적인 사절은 고려왕의 생일 축하사뿐이었다. 부정기적인 사절로서는 고려왕과 왕태자에 대한 책봉사, 황선사, 지례사, 기복사, 외교교섭사 등이었다. 이와 같이 보면 1년에 십여 차례씩 약 100년간 사절을 보냈을 것이다. 한 차례의 사절이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명시된 바 없으나 1039년 12월에 요나라 동경에서 보낸 회례사는 9명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043년 11월의 책봉사는 133명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301).

2) 거란과의 공교역

고려에서 거란(요)에 보낸 사절이 『고려사』에는 141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19회는 토산물을 바치는 사절,³¹⁾ 2회는 예물을 바치는 사절이었다.³²⁾ 토산물은 매년 바치는 것이 상례인 점으로 보아 많은 경우가 역사서의 기록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산물과 예물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자료 36〉 1008년 (고려에서) 용수초석을 바치고 아울러 중경성을 (쌓은 것도) 축하하였다(중-302).

〈자료 37〉 1038. 7. 거란에서 부쳐온 조서에 “...공납으로 보낸 금흡병, 은약병, 복두, 사저포, 공평포, 노원차, 대지, 세목, 용수등석 등등을 보낸 데 대해서도 잘 알았다.”(1-284)

31) 고려사 세가에 의하면 995년, 995년, 1039년, 1040년, 1041년, 1075년, 1081년, 1087년, 1098년, 1099년, 1100년, 1102년, 1103년, 1104년, 1107년, 1108년, 1112년, 1113년, 1113년 등이다.

32) 1095년, 1096년.

〈표 5〉 고려에서 거란(요)에 보낸 공교역품

| | 1038 | 자료 38 | 자료 39 |
|--------|---------------|---|------------------|
| 왕실 용품류 | 복두 | | 어의 |
| 금은제품류 | 금흡병, 은약병 | 금제그릇 200량, 금제포두 1벌 50량, 금사라 50량 | 금 |
| 옷 감 류 | 사저포, 공평포 | 자화면주 100필, 백면주 500필, 세포 1,000필, 추포 5,000필 | |
| 무 구 류 | | 금장식 안장과 고삐 갖춘 말 1필 50량 | |
| 먹거리류 | 노원차 | 법청주 100병, 노원차 10근, 인삼 | 멥쌀 500석, 찹쌀 500석 |
| 기 타 | 대지, 세목, 용수 등석 | 동제그릇 1,000조, 등나무그릇 50가지, 목도패 10개, 종이, 먹 | |

〈자료 38〉 신라국 진공예물. 금제그릇 200량, 금제포두 1벌 50량, 금사라 50량, 금장식 안장과 고삐 갖춘 말 1필 50량, 자화면주 100필, 백면주 500필, 추포 5,000필, 동제그릇 1,000조, 법주 청주 100병, 노원차 10근, 등나무그릇 50가지, 목도패 10개, 수량 미정의 인삼, 종이, 먹.³³⁾

〈자료 39〉 횡선사가 바친 물건, 멥쌀 500석, 찹쌀 500석, 어의, 금.³⁴⁾

자료 37은 1038년 4월에 김원충을 거란에 보내 안부를 물은 다음 은혜에 사례하고 겸하여 연호를 청하였는데, 이 때 가지고 간 예물을 받고 이에 회답하는 조서내용의 일부이다. 자료 38과 자료 39는 13세기 후반에 쓰여진 거란국지에 실려 있는 고려에서 바친 예물과 횡선사가 바친 물품을 적은 것이다. 이는 품목과 수량이 적혀 있는 유일한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인삼, 종이, 먹, 금 등은 수

33) 신라의 공물은 고려 공물의 잘못임. [5]-544.

34) 장동익 [5], 544쪽.

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선사가 바친 물건이 매년 보내는 것인지 특수한 경우에만 보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찻쌀과 맵쌀을 500석씩 보내고 있다. 고려에서 거란에 보낸 공물은 비교적 단순하고 예물도 가짓수와 수량면에서 많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종이와 먹 그리고 용수석 등이 보내진 점이다.

거란에서 고려에 보낸 사절이 약 220회였는데, 이 중 책봉사는 17회였다. 왕을 책봉하고 예물을 보낸 것이 19회, 태자를 책봉하고 예물을 보낸 것이 5회 기록되어 있다. 왕의 생일 축하에는 한 번만 예물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 40〉 1049. 1. 거란에서 보내 온 조서는 “...책명을 전하게 하고 겸하여 수레, 복장, 관, 검, 관인, 옷띠, 피륙, 말안장 등 여러 가지 물품을 별지 목록과 같이 보내니...”(1-323)

〈자료 41〉 1057. 3. “거란에서...왕태자를 책봉하고...관복, 수레, 은그릇, 피륙, 말안장, 활, 화살 등 물품을 별지와 같이 보내니...”(1-360)

〈자료 42〉 1095. 11. “요나라에서...전입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조서에 “...의복, 피륙, 산마, 활, 화살 등 물품을 별지 목록과 같이 보내니...”(2-4)

〈자료 43〉 1097. 1. 요나라에서 황선사를 보내 왔다. 칙서에 “...이제 의복, 피륙, 산마, 활, 화살 등 물품을 별지 목록과 같이 보내니...”(2-11)

〈자료 44〉 매차 회사물건, 서옥요대 2벌, 습의 2벌, 금도금 안장과 고삐 갖춘 말 2필, 흰 안장과 고삐 갖춘 말 5필, 산마 20필, 활, 화살, 기장 2벌, 비단 200필, 명주 1,000필, 양 200마리 그리고 술과 과일.³⁵⁾

35) 장동익 [5], 544쪽.

〈표 6〉 거란(요)에서 고려에 보낸 공교역품

| | 1038 | 1057 | 1095 | 자료 44 |
|--------|------------------|---------------|--------------|--|
| 왕실 용품류 | 관인, 관, 복장, 옷띠 | 관복 | 의복 | 서옥요대 2벌, 세의 2벌 |
| 금은제품류 | | 은그릇 | | |
| 무 구 류 | 말안장, 검 | 말안장, 활, 화살 | 안마, 활, 화살 | 도금 안장 갖춘 말 2필, 흰 안 장 갖춘 말 5필, 산마 20필, 활, 화살, 기장 각 2벌 |
| 옷 감 류 | | | | 비단 200필, 명주 1,000필 |
| 기 타 | | | | 양 200마리 |

자료 40은 왕을 책봉하면서 예물을 보낸 기록이고, 자료 41은 왕세자를 책봉하면서 보낸 예물이다. 그리고 자료 42는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물이고, 자료 43은 횡선사를 보내면서 보낸 예물이다. 자료 44는 고려에서 공물을 바칠 때마다 그 사신이 고려로 돌아갈 때 답례로 보낸 예물의 정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거란에서 보면 물품 중 수량이 기록된 것은 1088년 12월에 사신을 보내 양 2,000마리, 수레 23대, 말 3필을 보냈다는 기록(1-46)과 자료 44뿐이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대비한 것이 〈표 6〉이다. 이 외에 1097년 1월의 횡선사와 1108년 1월의 책봉사가 가지고 온 예물은 1095년에 보낸 예물 목록과 같았다.

앞의 모든 거래는 A형 거래였다. C형 거래로 볼 수 있는 사례는 1115년 11월 요나라에서 고려에 군사원조를 요청하면서 사신편에 피륙과 물품들을 보내 온 것이다(2-135). 그리고 1093년에 양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요사에 있을 뿐이다(중-206). 그러나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양국간의 공교역은 A형과 C형만의 자료를 볼 수 있었다.

3) 거란과의 공사교역

거란과의 공사교역에 관한 자료는 단 하나만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요의 관리가 사적으로 능라와 채색비단을 바치고 있다. 그 뜻을 알 수 없는 행위이지

만 이 거래는 거란의 개인이 고려 조정에 비단을 바친 E형 거래임에는 틀림 없다.

〈자료 45〉 1095. 5. “요나라 동경회례사 고수가 우리 나라에 왔다. 그가 개인 선물로서 능라와 채색비단을 매우 많이 바쳤다. 왕이…그를 불러보고 …음식과 의복을 주게 하였다.”(2-484)

4) 거란과의 사교역

고려와 거란은 국경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때로는 여진이 가로막고 있던 때도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사람과 재화가 서로 오고 가고 하였을 것이다. 즉, 사교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에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경이 봉쇄되기 때문에 사람과 재화의 교류가 중단되고 두 나라 국민은 서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경지대의 지방관리나 국경 감시관원은 교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교역은 국경지역민이나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래서 1088년 2월에 압록강 안에 각장(시장)을 설치하려고 요나라에서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요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각장을 설치하면 요에서 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게 되어 이득이 요에 귀속될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즉, 고려는 한편으로 국경수비대책을 세우면서(1-459)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각장 설치계획의 폐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1-462). 그 후의 결과는 알 수 없으나 국경지대에서 사교역이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역품목은 지역적 특성과 문명의 차이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서 보면 거란에서는 동물가죽류와 모직류를 수출하였을 것이고, 고려에서는 모시와 마포 그리고 곡물을 주로 수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문명의 차를 감안한다면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 금은제품과 동제품들을 수출하였을 것이다.

4. 여진(금)과의 교역

1) 여진과의 관계

『고려사』에 나타나 있는 여진과의 관계는 948년 9월 동여진 대광 소무개 등이 말 700필과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었다(1-127). 그 후 약 60년간의 관계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가 1011년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120년경까지 약 100년간은 동·서 여진의 장군, 추장, 사신,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고려에 와서 토산물과 예물을 바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이어졌다. 여진은 1100년대 초에 동여진 추장 영가(후에 금나라 목종)가 실력을 쌓아서 1104년부터는 고려의 북방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관계는 1109년에야 완화된 듯 하다. 그 후 여진은 요를 격파하고 1115년에 금을 세우고 황제를 자칭하면서 고려에 형제의 관계를 맺자고 하다가(1117년) 번국화를 강요하게 된다(1125년). 이 때 금은 이미 요의 연경을 함락시키고(1122년) 중국의 서하를 항복시켰으며(1124년) 송의 황제를 사로잡아(1125년) 태자를 황제의 위에 올렸다가 다음 해 송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행사하고 있었다. 고려는 1126년 금에 사신을 보내 번국의 예를 치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부터 고려는 금이 망하는 1220년대까지 약 100년간 번국과 황제국의 관계이지만 쌍방간의 관계를 이어갔다. 여진과의 관계에서 전기 100년간의 교류가 후기 100년간의 교류보다 더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년 동안에 고려에 오는 사절의 횡수가 많을 때는 10여 회나 되고 한 번에 오는 인원수는 대체로 무리를 지어 오는 바 많게는 1,045명(1044.4)이라는 초대형 사절일 때도 있었다. 『고려사』에는 345회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후기 100년간의 쌍방 사절왕래 횡수가 344회로 전기의 일방적인 사절왕래 횡수와 같다(『고려사』에 기록된 횡수). 이들이 오고 가면서 공교역에도 큰 역할을 하였겠지만 보이지 않는 공사교역과 사교역에도 보다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 먼 길을 사적 이득이 없이 자주 무리지어 내왕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여진(금)과의 공교역

동여진과 서여진을 가릴 것 없이 전기 100년간 고려에 온 사절들은 대체로 토산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이 국가의 사신 자격으로 온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그들이 바친 공물의 구체적인 품명을 기록한 경우는 적고, 특히 수량까지 적은 경우는 몇몇에 불과하다. 물품명은 말, 초서피, 표서피, 청서피, 갑옷, 기치, 투구, 철갑, 병기, 번미, 과선, 고시, 낙타, 금 등이다. 한편 수량이 명기된 품목은 “948년 9월 소무개가 말 700필과 토산물을(1-127), 1020년 4월 동여진 추장 달로가 번미 300섬을(1-224), 1030년 4월 동여진의 만투가 과선 4척과 고시 11만 7,600개를(1-247), 1030년 5월 동여진의 소물개 등이 말 9필과 과선 3척과 고시 5만 8,600개와 병기를 바쳤다.”(1-248) 등의 기록뿐이다. 이를 정리하면 모피류(초서피, 표서피, 청서피), 병기류(갑옷, 투구, 철갑, 병기, 과선, 고시), 말과 낙타류, 번미 등이다. 이에 대해 고려에서 지급한 물품은 의복과 은제그릇, 포백, 기타 물품, 실직이 아닌 문산계나 무산계의 벼슬, 향직 등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공교역으로 보기로 한다.

후기 100년간의 쌍방교역에서는 매년 토산물을 보냈고, 황제의 생일 축하사, 신년 축하사, 왕의 생일 축하사에 대한 사례사를 정기적으로 보냈으며, 비정기적으로는 각종 축하사, 사례사, 외교교섭사 등을 보냈다. 이 때마다 관례에 따른 예물을 교환하였을 것이다.

〈자료 46〉 1130. 3. 금나라에서 보낸 조서에 “...나에게 보낸 사례물품들이 은그릇, 차, 포 등임을 알았다.”(2-228)

〈자료 47〉 1176. 11. 장군 오랑척과 황중 윤중회를 (금나라에) 보내 서언을 잡아 보낸 데 대하여 사례하게 하는 동시에 옥대 2개를 예물로 전하게 하였다(2-402).

〈자료 48〉 1213. 9. 량장 노육부를 금나라에 보내어 금은주라는 구슬을 선사하고 국상을 알렸다(2-494).

〈자료 49〉 1220. 2. “한순, 다지 등이 금나라 원수 우가하에 투항하니 우가하가 그들을 피어다가 머리를 베어…서울에 보냈다. (고려에서는) 그에게 은주전자, 은반, 은바리 각 1개, 은잔 2개, 세포와 저포 각 50필, 광평포 500필, 쌀 1,000섬을 보내 공로에 보답하였다.”(2-514)

그러나 금에 보낸 토산물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물품명이 명기된 기록은 4건뿐이다. 자료 46은 1129년 11월에 “금나라의 거듭되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지라 대소국가의 의리를 정하고 대대로 인방의 직책을 다하려 한다. …당신의 요구에 응할 것이며 공납에 대한 일은 남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2-226~227)라는 표문을 보내면서 예물로 바친 것이다.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품목은 지극히 간단하여 은그릇과 차 그리고 포뿐이다. 자료 47은 서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가 금나라에 도망하였었는데 이 때 금나라에서 그를 잡아 보내었으므로 이에 사례사를 보내면서 옥띠 2개를 보냈다는 기록이다. 자료 48은 고려 강종의 죽음을 통보하려 간 사신이 방문의 예물로 금은주라는 구슬을 바치고 있다. 자료 49는 자료 47과 같은 성격의 사례하는 예물로서 고려의 의주별장 한순과 량장 다지가 1219년 10월에 의주를 수비하던 장수를 죽이고 배반하여 조정에서는 장군 조렴경을 보내 그들을 무마시켰었는데 다음 해 2월에 금나라 장수 우가하에게 도망가 투항하였던 것이다. 우가하는 도망은 역신을 잡아 주고 큰 상을 받은 것이다. 자료 46~48은 A형 교역이라 보겠으나, 자료 49는 금나라 원수에 보낸 것인지 우가하 개인에게 보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의 금에 대한 공교역품은 은제품, 옷감, 옥공예품, 차와 쌀 등이었다.

금은 고려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절로서 고려왕의 생일 축하사가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비정기적인 사절을 보내고 있다. 금에서의 공교역의 내역은 왕을 책봉하면서 보내는 예물과 기타 사절을 보내면서 보내는 예물이 있다. 금에서

〈표 7〉 고려에서 여진(금)에 보낸 공교역품

| 품목 \ 연도 | 1120 이전 | 1130 | 1220 |
|---------|------------|------|-------------------------------|
| 금은제품 | 은그릇 | 은그릇 | 은주전자 1개, 은반 1개, 은바리 1개, 은잔 1개 |
| 옷 감 류 | 포백 | 포 | 세포 50필, 저포 50필, 광평포 500필 |
| 먹거리류 | | 차 | 쌀 1,000석 |
| 기 타 | 의복, 명예직 관직 | | |

고려에 물품을 명시하여 보낸 기록은 8건이 나타나 있는 바 1118년에 말 1필을 보낸 기록(중-315), 1169년 7월에 양 2,000마리를 보낸 기록(2-371), 1183년 6월에 양을 보낸 기록(2-427) 그리고 다음의 자료 50~53 등이다.

〈자료 50〉 1142. 5.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조서에 “...이제 사신을 파견하여 책명과 아울러 구류관 1벌, 구장복 1벌, 옥규 1개, 금인 1개, 옥책 1개, 상포 1개, 말 4필을 보내는 외에 따로 의복, 피륙, 기명 등 약간과 안장과 고삐 갖춘 말 3필과 산마 4필을 보낸다.”(2-281~282)

〈자료 51〉 1172. 5.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고 보내 온 물품은 구류관 1벌, 구장복 1벌, 옥규 1개, 옥책 1개, 금인 1개, 타뉴상포 1채, 말 4필과 특별히 보낸 의복 5벌, 세의착 200필, 세궁 1개, 수리의 것으로 만든 큰 화살 28개, 안장과 굴래 갖춘 말 2필, 산마 7필 등등이었다(2-388).

〈자료 52〉 1127. 9.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조서를 전하였는데 조서에 “...이제 당신에게 의복, 무소뿔, 금, 은, 피륙 등 물품을 보내니...”(2-202)

〈표 8〉 금에서 고려에 보낸 공교역품

| | 1127 | 1142 | 1172 | 1212 |
|-----------|-------------|---|--|-----------------------|
| 왕실 용품류 | 의복, 무 소뿔 | 구류관 1벌, 구장복 1벌, 옥구 1개, 금인 1개, 옥 책 1개, 상포 1채 | 구류관 1벌, 구장복 1 벌, 옥구 1개, 금인 1 개, 옥책 1개, 상포 1채 | 의복, 금 인, 수레 |
| 금은제품류 | 금, 은 | 그릇 | | |
| 무 구 류 | | 안장과 고삐 갖춘 말 3 필, 산마 4필 | 말 4필, 세궁 1개, 수 리깃화살 28개, 안장 과 굴래 갖춘 말 4필, 산마 7필 | 안장 갖춘 말, 활, 화 살 |
| 옷 감 류 | 피륙 | 피륙 | | |

〈자료 53〉 1128. 12.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왔다. 조서에 “...당신에게 의복, 피륙, 은그릇 등 물품을 별지 목록과 같이 보내니...”(2-216)

〈자료 54〉 “금나라에서...책명을 주는 동시에 수레, 의복, 금신, 피륙, 활, 화살, 안장 갖춘 말 등을...보낸다.”(2-491)

자료 50과 자료 51은 왕을 책봉하면서 보내 온 예물의 품목과 수량을 밝힌 예인데 자료 51이 보다 자세하다. 자료 50에서는 활과 화살이 빠졌으나 기록하면서 빠졌을 것이다. 자료 52는 금이 송을 멸하고 그 기쁨을 번국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서 보낸 조서 내용의 일부이다. 자료 53은 보유사를 보내면서 보낸 물품이다. 따라서, 자료 51이 금에서 보내는 가장 격이 높은 예물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자료 52와 자료 53은 일반적인 축하사들을 보내면서 함께 보내는 예물수준이라 보겠다. 자료 50 또는 자료 51과 자료 54를 비교할 때 왕을 책봉하는 예물이 나아진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즉, 금에서의 공교역은 양을 제외하면 예물교환수준을 넘지 못하였던 것이다.

3) 여진(금)과의 공사교역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의 추장, 장군 또는 사신이 무리로 와서 토산품과 기타 공물을 바칠 때 그들에게 의복과 그릇, 포백 등을 주었는데 그 중의 일부는 그 개인에게 주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우는 E형의 공사교역이라 할 수 있다.

<자료 55> 1018. 10. 구주에 있는 여진인 목사 등 34명에게 견주포 500여 필을 주어 적을 체포한 그들의 공로를 표창하였다(1-218).

<자료 56> 1050. 7. 동여진의 추장 골화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는 한편 번인에게 납치되어 갔던 남녀 4명을 송환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금과 비단을 주었다(1-329).

<자료 57> 1103. 고려왕이 “사갈은 여직의 족제이니 예우가 융숭하여야 한다.” 하며 큰 은반 한 개를 주어 사례하였다(중-311).

<자료 58> 1185. 1. 서북면 병마사 이지명이 거란사 500속을 왕에게 바쳤다. 이것은 지명이 임지로 떠날 때에 왕이 그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친히 지시하기를 “의주에서 금나라와의 호상교역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 용주창고에 있는 저포로서 거란사를 교역하여 바치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친 것이다(2-432).

<자료 59> 1273. 3. 왕이 (조양필을) 초대하여 수고를 위로하고 은 3근과 저포 10필을 선물로 주었다(3-129).

자료 55와 자료 56은 여진의 관리와 추장들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고려 조정에서 그들에게 금과 비단을 주었다는 것인 바 E형 교역이며, 자료 57은 여

진의 사신인 사갈에 융성한 대접과 함께 큰 은반을 주었다는 것이다. 자료 58은 고려관리로 하여금 국고의 저포를 가지고 여진 시장에 가서 거란사를 교역하여 왔다는 바 D형 교역에 관한 기록이다. 자료 59는 자료 57과 비슷한 예로 은과 모시베를 선물하였다. 따라서, 고려는 공사교역에서 금과 은, 은제품, 비단과 모시베를 주로 수출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진(금)에서 고려에 보낸 공사교역품은 말과 양 그리고 거란사였다.

4) 여진(금)과의 사교역

고려와 여진과는 국경을 연결하고 있었으므로 국경지대에서 많은 사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200년 이상 인적 교류가 연중 십여 차례씩 무리를 지어 이어졌는 바 그들을 통하여서도 사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료 60〉 1216. 7. 지난 해부터 금나라 사람들이 병란과 관련하여 곡식이 고갈 되었으므로 저마다 앞을 다투어 보물을 가지고 와서 의주, 정주 관문 밖에서 미곡을 교역하여 가는데 지어는 은 1정으로 쌀 4~5석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므로 장사꾼들이 다투어 가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나라에서 아무리 형벌을 엄격하게 하고 재물을 몰수하여도 탐오행위가 끝이 없고 비밀교역이 계속되었다(2-500).

〈자료 61〉 1183. 8. 양부의 재추가 아뢰기를 “매년 사명을 띠고 금나라에 가는 자들이 물품교역에서 이익을 보기 위하여 토산물을 많이 가지고 다니므로 물품 운반하는 폐단에 대하여 역리들이 괴롭게 여기오니 사사로 가지고 다니는 물품 채찍은 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그 관직을 삭탈하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렇게 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종래의 관례와 같이 제한을 없애자고 하니 왕이 또 이를 허락하였다(2-428).

자료 60은 국경지대에서 사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교역의 이익이 있으

면 제아무리 나라의 감시와 금령이 엄하다 하여도 관의 감시를 피하여 사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 또한 병란이나 흉년이 들 때면 곡물이 가장 귀중한 재화가 되었던 사실도 나타내고 있다. 자료 61은 공적 사명을 띠고 다니는 국가의 사절들이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사교역의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여 역리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폐단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이 어찌 고려의 사절들에 국한된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외국사절도 한정된 인원인 역리의 운반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많은 수행원 또는 하인을 거느리기도 하며 민간상인을 동행시키기도 하였을 것이다. 한 번에 1,000명 이상의 무리를 이루는 여진인들이나 책봉사를 보내면서 “상절이 18명이고 산상절이 14명이고 중절이 27명이고 하절이 100명이고 수레가 21량이고 말이 14필이고 강담부가 100명이었다.”(2-466) 하니 이들이 바로 명목상은 사절단이나 실질적으로는 사교역단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이 방대하게 이루어졌을 사교역에서 어떤 품목들이 교역되었는지를 밝힐 만한 다른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5. 몽고(원)와의 교역

1) 몽고와의 관계

몽고는 1206년에 태무진이 즉위하면서 징기스칸이라 칭하고 대제국을 형성해 나갔다. 1215년에 금의 연경을 격파하고, 1227년에 서하를 멸하였으며, 1229년에 오고타이칸, 즉 태종이 즉위하였다. 1234년에는 금을 멸망시키고, 1260년에는 쿠빌라이칸, 즉 세조가 즉위하였다. 1271년에는 국호를 원이라 고치고, 1279년에 송을 멸하고 중원을 평정하였다. 1350년대에 들어서 홍건적의 난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반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368년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게 되어 원제국은 몽고로 쫓겨나게 된다. 이 때 이후의 원나라를 북원이라 부른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원왕조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었다.

고려와 몽고와의 관계는 1218년 몽고군과 동진군이 연합하여 거란(요)군을 치기 위해 고려의 북방을 침입한 데서 시작되었다. 고려도 그 때 거란을 공격하기 위하여 몽고군과 함께 강동성에서 거란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았다. 그 후 몽고는 전승국으로서 고려에 사절을 보내어 강화를 청하고 타협과 침략을 번갈아 가면서 1380년경까지 약 160년간 관계를 지속하였다. 몽고는 1230년부터 1260년의 기간에 무려 여덟 차례의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하면서 고려를 압박하였다. 1254년 12월의 기록에 보면 이 때 몽고군에 잡혀 간 사람이 20만 6,8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2-603). 고려는 1259년 태자를 원에 보내 표문을 바치고 신속하게 대체함으로써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불모를 보내라, 호적을 작성하여 보내라, 우역을 설치하라, 군사를 내어라, 군량을 운반하라, 군비를 갖추어라, 공물을 바치라는 등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받았다. 그러다가 1274년 5월 세자가 몽고 황제의 딸과 결혼하고 6월에 왕위에 오르면서 고려는 몽고의 부마국이 되었고 몽고로부터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역시 번국으로서 100년간 평화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고려에서 원나라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절은 몽고 황제의 생일 축하사, 새해 축하사, 공물 진봉사뿐이나 어떤 때는 황후와 황태자 생일 축하사도 보냈었다. 비정기 사절로는 각종 경축사절, 조문과 제전 사절, 외교교섭사절, 사례사절 등이 있었다.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사절단은 한 달에 무려 십여 차례씩 이어졌던 때도 있었다. 이 같은 빈번한 인적 교류는 당연히 많은 물적 교류를 수반하였을 것이다.

2) 몽고와의 공교역

몽고와의 공교역은 공물을 바치고 왕실간에 각종 예물을 교환하며 국가간의 사고 파는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물과 예물과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한 점이 많다. 토산물을 보냈는데 그것이 공물인지 예물인지가 구분되지 않는다. 몽고와의 공교역은 1259년 4월 고려의 태자가 표문을 가지고 몽고에 갔는데 이 때 예물로 말 300필을 보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2-268). 그 후 고려의 사신

은 토산물과 예물들을 바쳤는데 단일 품목으로는 매, 인삼, 황칠, 범 가죽, 환도, 칠, 화문석, 처녀와 내시 등이었다. 토산물과 예물의 일부는 다음의 자료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자료 62〉 1262. 12. 고예를 몽고에 보내 표문과 함께 금술병 3개, 금주전자 2개, 은주전자 8개, 수달피 77매, 진자라 5필, 가는 모시 8필, 종이 540장, 대모로 만든 칼집 3개를 보냈다(3-33).

〈자료 63〉 1263. 4. 예빈경 주영량, 량장 정정보를 몽고에 파견하여 수달피 500매, 명주 100필, 흰 모시 300필, 표지 500장, 주지 1,000장을 표문과 함께 보냈다(3-34).

〈자료 64〉 1293. 12. 왕과 공주가 황태자인 진금의 비 활활진의 궁전을 방문하고 금종과 금우를 각각 1벌, 백은으로 가득 새겼고 대를 도금한 잔 한 쌍, 은으로 가득 새긴 병 1개, 은종 9개, 은우 20개, 범 가죽과 표범 가죽 각각 9장, 수달피 27장, 가는 모시 45필, 검은 매와 새매 각각 한 마리씩을 선사하였다(3-303).

〈자료 65〉 1294. 4. 황태자가 황제의 위에 오르니 그가 곧 성종이다. 왕과 공주(왕비)가 금잔, 은 루규화잔을 각각 1벌, 금병, 금루은준호, 탕병, 술병 각각 1벌, 반루은준, 호병 각각 1벌, 은우 81벌, 은종 18벌, 자라 9필, 세저 86필, 표범 가죽 18장, 수달피 81장 등 예물을 바치고 축하의 뜻을 표하였다(3-305). (11일 후에) 황제가 왕에게 은 3만량을 주었다(3-306).

〈자료 66〉 1295. 4. 조심을 원나라에 보내 제주의 토산물인 모시 100필, 목의 40열, 포 6롱, 너구리 가죽 76장, 들고양이 가죽 83장, 누런 고양이 가죽 200장, 노루 가죽 400장, 말안장 5부를 헌납하였다(3-312).

- 〈자료 67〉 1296. 11. 왕과 공주(왕비)가 황제를 예방하고 토산물을 바쳤는 바, 그 물품명은 다음과 같다. 금병, 금종 2개, 루은호, 은탕병 각각 1개, 은잔 1벌, 은호병, 은대준 각각 1개, 반루은호병 2개, 은대종 1개, 은우 50개, 범, 표범의 가죽 각각 13장, 수달피 76장, 자라 10필, 흰 모시 100필, 대모초자 10개이다(3-319).
- 〈자료 68〉 1377. 3. 이자송을 복원에 보내어 왕을 책봉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표문을 보내고 예물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황제에게는 은 7정, 모시 81필, 황후에게는 백모시, 황모시, 홍모시 각 9필을, 제2황후에게는 백모시 9필, 황모시 5필, 홍모시 4필을 각각 보내고, 중서성 태사 활활참목아와 태보 합라장, 태위 만자에게는 각각 백모시 8필, 흑마포 7필, 안장 하나씩을 주고, 평장, 참정, 대대부 이하 내관소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모시와 마포를 차등 있게 보내었다(4-269).
- 〈자료 69〉 1311. 2. 김지겸을 원나라에 보내어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금복자(술그릇) 2개, 술잔 2개, 은복자 20개, 진자라 6필, 대모칼집 9개를 선물하였다(3-430).

자료 62는 태자를 몽고에 보내 표문과 예물을 바친 후 고종이 죽고 태자가 원종으로 즉위한 이후 평화시에 사절을 보낼 때의 사례이고, 자료 63은 1260년 이후 평화시기의 공물을 바친 예이다. 여기서 보면 공물은 각 품목별로 일정량이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64는 왕과 왕비가 원나라의 황태자비를 예방하면서 예물로 바친 물품이다. 자료 65는 몽고 황제 즉위 때에 왕과 왕비가 참여하였다가 황제에게 축하의 예물을 바친 예이다. 이 때는 충렬왕 때인 바 고려가 몽고에 대해 가장 당당한 때이며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룬 때였으므로 예물 역시 가장 화려한 예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 66은 제주의 특산물을 바친 예로서 각종 짐승가죽이 이채롭다. 자료 67은 왕과 왕비가 황제를 예방하였을 경우에 바친 예물의 예이다. 금은제품과 수달피와 호랑이 가죽 그리고

〈표 9〉 고려에서 몽고(원)에 보낸 공교역품

| 연도 품명 | 자료 62 (1262) | 자료 63 (1263) | 자료 65 (1294) | 자료 67 (1296) | 자료 69 (1311) |
|----------|--------------------------------|-----------------------|--|--|-------------------------------|
| 금은 제품 | 금술병 3개, 금주전자 2개, 은주전자 8개 | | 금잔 1벌, 은루 규화잔 1벌, 금 병 1개, 금루은 주호 1개, 탕병 1개, 술병 1개, 반루은준 1개, 호병 1개, 은우 81벌, 은종 18벌 | 금병, 금종 2개, 루은호 1개, 은 탕병 1개, 은잔 1벌, 은호병 1 개, 은대준 1개, 반루은호병 2 개, 은대종 1개, 은우 50개 | 금복자 2개, 금술잔 2개, 은복자 20개 |
| 옷 감 | 진자라 5필, 가는 모시 8필 | 명주 100필, 흰 모시 300필 | 자라 9필, 가는 모시 86필 | 자라 10필, 흰 모시 100필 | 진자라 6필 |
| 가족류 | 수달피 77장 | 수달피 500장 | 수달피 81장, 표 범 가죽 18장 | 수달피 76장, 범 가죽 13장, 표 범 가죽 13장 | |
| 기 타 | 종이 540장, 칼집 3개 | 표지 500장, 주지 1,000장 | | 대모초자 10개 | 대모칼집 9개 |

| | |
|---------|---|
| 금은제품류 | 금, 은, 금병, 은병, 금주전자, 은주전자, 금그릇, 은그릇 |
| 옷 감 류 | 모시, 명주, 사, 라 |
| 가 족 류 | 범 가죽, 표범 가죽, 노루 가죽, 수달피, 고양이 가죽, 곰 가죽, 너구리 가죽 |
| 먹 거 리 류 | 인삼, 수유, 탐라소고기, 따오기고기 |
| 기 타 | 철, 놋쇠, 환도, 종이, 서적, 그림부채, 그림, 그림부처, 화문석, 칼집, 말 안장, 말, 매, 목의, 대모초자 |

모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68은 원나라로부터 왕을 책봉받고 사례사를 보냈을 경우 원의 황제, 황후 그리고 원나라 조정의 관련 관리들에게 각각 물품을 보낸 예인데, 예물은 주로 각종 모시베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69는 원나라 황태자의 생일 축하사를 보낼 경우 바친 예물의 예이다. 앞의 예에서 보면 공물은

초기에는 금은제품, 수달피, 피륙,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 예물은 금은제 주기와 밥그릇류, 피륙, 수달피와 호랑이 가죽 등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에 고려사절이 몽고(원)에 가지고 간 물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화문석, 대소쿠리, 황철, 말안장 등 수공예품류, 철, 놋쇠, 환도 등 철물류, 새매, 꿩, 말 등 동물류, 인삼, 수유, 탐라소고기, 따오기고기 등 먹거리류, 기타 류로 종이, 서적, 그림부처, 금강산도, 병풍, 그림부채 그리고 처녀와 내시 등이었다. 또한 불경을 필사할 승려도 보냈었다. 이 중 주요 품목은 모시베와 새매로서 이 두 품목은 빈도가 가장 높았다. 매는 상류층의 사냥놀이애 많이 쓰였고, 특히 쿠빌라이 황제의 애용물 중 하나였다.³⁶⁾ 그래서 고려에서는 응방도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매를 잡아 길들여 1년에 몇 차례씩 이를 원나라에 바쳤던 것이다.

한편 공교역의 범주에 드는 몽고에서 고려에 보낸 물품의 예는 많지 않다. 자료 70은 몽고가 1차 침입(1231. 8~12)을 마치고 철수하려 할 때 고려에 공물을 요구하면서 “금은 의복은 많으면 말 2만 필에 실어 보내고 적으면 말 1만 필에 실어 보내야 한다.”(1-541)는 협박장을 보내고 선수를 써서 예물을 보내는 시범을 보인 것으로 보겠다.

<자료 70> 1231. 12. 몽고 사신이 국가예물인 황금 70근, 백금 1,300근, 유의 1,000벌, 말 170필을 가지고 돌아왔다(2-542).

<자료 71> 1270. 2. “황제가 (고려)왕에게 금선주사와 색깔 있는 명주 200필, 말 4필, 활과 화살 등의 물품을 주고…”(3-133)

36)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쿠빌라이의 사생활을 기록한 것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한다. “궁전의 주위에는 연장 25km로의 성벽이 쌓여 있고, 그 안쪽은 샘과 시냇물과 잔디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정원에선 사슴과 노루를 많이 기르고 있다. 그것은 같은 곳의 우리 속에 들어 있는 200여 마리 매의 밥으로 쓰여지고 있다. 쿠빌라이는 가끔 말을 타고 이 정원을 지나다니는데 그 때는 표범을 데리고 다닌다. 마음이 내키면 표범을 놓아 주어서 사슴과 노루를 잡게 하여 그것을 매에게 준다. 이것이 쿠빌라이의 오락의 하나이다.”(고선지 [1], 272쪽)

〈자료 72〉 1296. 12. 황제가 왕에게 금 4정, 금단 2필, 명주 2필을 주고 왕을 따라간 신하들에게는 은 50정, 금단 18필, 수단 10필, 능소단 578필, 명주 486필을 주었으며, 부인들과 환관들에게는 능, 견 각각 27필을 주었고, 하인들에게는 목면과 견 각각 411필을 주었다(3-320).

〈자료 73〉 1296. 3. “김광취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왕에게 보내는 직금단, 홍견 각각 4필과, 태후가 보내는 포도주 두 그릇을 가지고 왔으며, …중서성에서는 선능, 홍초 각각 5필씩 예물로 보내 왔다.” (3-316)

〈자료 74〉 1311. 8. 원나라 황태후가 해로화를 보내어 초 5,800정을 불경필사의 상금으로 보냈다(3-432).

〈자료 75〉 황제는 서적 4,371권에 도합 1만 7,000권을 왕에게 선사하였는 바 이 서적들은 모두 송나라 비각장서로서 홍약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3-453).

〈자료 76〉 1352. 4. 원나라가 왕에게 활 300개, 화살 3만 개, 검 300개를 주었다(4-9).

자료 70은 몽고에서 고려에 보낸 최초의 예물이다. 이는 다분히 예물 규모의 시범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후로는 이러한 규모의 예물이 없었다. 자료 71~73은 원나라 황제가 고려왕에게 주는 예물의 예이고, 앞서 본 자료 65에서 은 3만 량을 왕에게 준 것도 왕의 예물에 대한 답례의 성격이라 보겠다. 자료 74는 불경을 필사한 데 대한 대가를 보낸 것이다. 자료 75와 자료 76은 특별한 선물이었다. 위에서 보면 몽고에서 고려에 보낸 예물은 금, 은, 비단, 명주 등 옷감류, 초와 저폐 등 현금, 술, 서적 등이었다. 이 외에도 중금, 저울, 말과 양, 강남쌀(1291, 1293) 등이 A형 거래의 대상이었다. B형 거래물은 대체로 비단, 골새와 해동청, 말과 양, 금은제품, 향, 의복과 술, 보초, 저폐 등 현금 등이

〈표 10〉 몽고(원)에서 고려에 보낸 공교역품

| 1231 | 1270 | 1288 | 1296 | 1352 |
|--------------------------------------|------------------------------|-------------|--------------------|------------------------|
| 황금 70근, 백금 1,300근, 유의 1,000벌, 말 170필 | 금선주사, 채색명주 200필, 말 4필, 활과 화살 | 금 4정, 금단 2필 | 적금단 4필, 홍건 4필, 포도주 | 활 300개, 화살 3만개, 검 300개 |

었다. 그리고 C형 거래의 예로 1283년 2월 원나라는 저장 1,000정으로 고려에 와서 전함을 수리하는데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2-248).

귀금속류로 금, 은, 옷감류로 서금, 중금, 비단, 홍건, 가축류로 말, 양, 낙타, 화폐류로 저장, 저폐, 보초, 금박, 기타로 서적, 쌀 등을 보내 왔다.

3) 몽고와의 공사교역

고려는 1220년대부터 1260년까지 몽고에 군사적 침입을 당할 때마다 몽고의 장졸에 많은 뇌물을 지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나라 사신들에게도 물품을 주어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자료 77〉 1231. 12. 몽고의 세 원수에게 금주전자, 크고 작은 잔반 각 1벌, 은 병, 수달피, 의복, 주포, 저포 등 물품을 선사하고 또 사신들에게 각각 차등 있게 선물을 주었다(2-540).

〈자료 78〉 1231. 12. 정묘일에 사람을 시켜 당고, 적거와 살레탑 등의 아들에게 은 5근씩과 저포 10필, 추포 2,000필, 말다래, 말굴래 등 물품을 주었다(2-541).

〈자료 79〉 1231. 12. 정축일에 뚜껑에 봉을 새긴 주전자와 술잔반침 1벌, 세저포 2필, 붉은 말 1필, 금은으로 장식한 안장, 수놓은 말다래 등 물품을 당고원수에게 주었다(2-542).

〈표 11〉 고려에서 원에 보낸 공사교역품의 예

| 자료 77 (1231) | 자료 80 (1232) | 자료 81 (1242) | 자료 82 (1253) | 자료 83 (1308) | 자료 84 (1338) |
|---------------------------|---------------------------|-----------------|-----------------|-----------------|-----------------|
| 금주전자, 크고 작은 잔반, 은 병 | 금장식 주전 자, 금그릇, 은 그릇 | | 금, 은, 술 그릇 | 은병 | 은, 초은 |
| 수달피 | 수달피 | 피혁 | 수달피 | 범, 표범, 곰 가죽 | |
| 의복, 주포, 저 포 | 라, 견, 능, 주 | 비단 | 비단, 저포 | 모시, 비단 | 베, 모시베, 비단 |

〈자료 80〉 1232. 4. 상장군 조창숙과 시어사 설신을 몽고에 보내어 칭신하는 표문을 전하고, 라, 견, 능, 주 각 10필과 금은으로 장식한 여러 가지 술주전자와 그림, 말다래 등 물품을 바치는 동시에 살레탑에게 편지를 보내고, 금은기명, 피륙, 수달피, 그림부채, 그림, 말다래를 주고 그 부하 16명의 관원들에게까지도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2-547).

〈자료 81〉 1242. 12. 몽고 사신들이 돌아갔다. 그들에게 피혁과 비단을 주었다(2-571).

〈자료 82〉 1253. 9. “대장군 고열을 시켜 야굴대왕에게 편지와 함께 금, 은, 주기, 비단, 저포, 수달피, 관대 등 물품을 보내고 그들의 장수, 아모간 등에도 모두 선물을 주었더니.”(2-590)

〈자료 83〉 1308. 11. 몽고 사신에게 은병 100개, 모시 200필, 비단 약 100필을 선사하였다(3-409).

〈자료 84〉 1338. 7. 환자 실리비에게 초은 300정을 선사하고 재추들도 그에게 은, 비단, 모시베, 범, 표범, 곰의 가죽들을 선사하였다(3-505).

〈자료 85〉 1353. 7. 산동(원나라 사신)등이 돌아갔다. 왕이 영빈관에 나아가 전 송하였으며 재추들이 그에게 은 2정, 모시와 삼베 각 9필, 능직 3필을 주었다. 이것은 오랜 관례였으나 다 받지 않고 떠났다(4-19).

전쟁중 잔혹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과 철군하여 줄 것을 몽고군 책임자에게 부탁하고 청원한 것이 자료 77~79의 뜻이다. 그것이 제1차 침입 때 당고, 적거 그리고 살레탑이라는 세 원수와 그들의 아들 및 그들의 부하장수들에게 금, 은, 금은제품, 피륙, 수달피, 말안장 등 막대한 양을 주고 있음이 자료 77~79와 자료 80의 뒷부분이다. 그 후 1260년까지 여덟 차례 몽고군의 침입이 계속되었었는데 그 때마다 한편으로는 전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몽고 원수와 외교교섭을 진행중 고려 조정은 그들을 상대로 예물을 보내며 교섭을 하였던 것이다. 이들 예물과 뇌물은 비록 일방적인 것이었지만 E형 교역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절을 전송할 때 관례적인 예물은 은 2정, 모시베와 삼베 각 9필 그리고 능직 3필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D형 거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1342년 6월 고려가 보초 150정으로 강남에서 경적 1만 800권을 구입한 사실(3-452), 1342년 3월 남궁신을 시켜 포목 2만 필과 금, 은, 초화를 가지고 유·연 지방에 가서 교역하게 하였고(3-531), 1343년 2월 부자와 대호군 임희와 전호군 윤장 등 십여 명을 불러서 내고의 보화를 주어 원나라에 가서 판매하게 하였으며(3-534), 9월에는 왕이 상인들에게 내탕에 있는 보물을 맡기어 원나라에 가서 판매하게 하였다(3-540)는 등 국고의 재화를 원나라 시장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원에서 고려에 보내 온 공사교역품에 관한 자료는 14건이 나타나 있다.

〈자료 86〉 1273. 7. “김방경이 황제의 소환을 받고 원나라에 가…금장식한 말안장, 문채 있는 의복, 금, 은을 받았다.”(3-133)

〈자료 87〉 1296. 12. “황제가…왕을 따라간 신하들에게 은 50정, 금단 18필, 수단 10필, 능소단 578필, 명주 486필을 주었으며 부인들과 환관들에

〈표 12〉 몽고(원)에서 고려에 보낸 공사교역품

| | |
|--------------------------------|--|
| 금은제품류 옷 감 류 무 구 류 기 타 | 금, 은 비단, 관견, 명주, 금단, 수단, 능소단, 목면, 관소 활, 검, 말과 안장 초, 금박, 향 |
|--------------------------------|--|

게는 능, 견 각 27필을 주었고, 하인들에게는 목면과 견을 각각 411 필씩 주었다.”(3-320)

〈자료 88〉 1300. 7. 황제가 왕의 수행관리에게 금단의 표리를 각각 336필과 활과 검 각각 30개, 말안장 20개를 주었다(3-337).

〈자료 89〉 1300. 12. 원나라에서 백단홀독불화를 보내서 향 15근, 필단 30필, 견 300필, 초 864정을 가지고 와서 장경을 전경하였다(3-344).

〈자료 90〉 1303. 2. “원나라에서…홀도에게 관소 15표리, 점견리사견 300필, 황향 15근, 초 610정 25량을 보내어 장경을 전경하게 하였다.”(3-362)

자료 86은 고려의 장군에게 황제가 예물을 하사한 경우이며, 자료 87과 자료 88은 고려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간 신하들에게 물품을 하사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 89와 자료 90은 원나라 황실을 위해 고려 사찰에서 불경을 독경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낸 물품이다. 이 외에도 1274년 3월에 명주 1만 2,350필을 가지고 와서 소를 사갔고(3-97), 1274년 4월에 명주 3만 3,154필로 군량미를 사갔으며(3-139), 1280년 11월에 명주 2만 필을 가지고 와서 쌀을 사서 군량에 보충하였다(3-234). 그리고 1292년 1월에는 초 1,000정을 보내와 여러 역참의 소를 원나라 관리들이 가져간 데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였고(3-291), 1310년과 1311년에는 초와 금박을 보내어 불경을 필사하는 상금으로 쓰도록 하였다(3-403, 432).

4) 몽고와의 사교역

고려의 사신이나 몽고의 사신들이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사사롭게 교역활동을 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몽고와의 관계를 맺고 있던 때는 몽고가 여진과 거란세력을 복속시켜 그의 영토 안에 흡수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와 국경을 연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의 사교역도 활발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 〈자료 91〉 1353. 7. 원나라의 어항사 최백첨목아가 처녀 6명과 거문고 및 비파 등 향악을 가지고 돌아갔다(4-18).
- 〈자료 92〉 1224. 1. 동진국에서 사신을 보내 “본국(동진)은 청주에 귀국은 정주에 각각 각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같이 물품을 매매하자.”고 하였다(2-520).
- 〈자료 93〉 1286. 4. 원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상인들에게 세전을 계산·부과하였다(3-263).
- 〈자료 94〉 1295. 4. 원나라에서 보내 온 조서에 “...상인들이 관창의 돈을 빌려 갔다가 그 이식을 갚지 아니하고 피차간에 감추어 주는 자가 많은데, 국내와 국외의 관원들은 이러한 상인들을 찾아 내어 이식을 규정대로 받아서 천부사에 납부할 것이다.”(3-312)
- 〈자료 95〉 1263. 12. 주영량, 정정보를 섬에 귀양보냈다. 주영량등이 일찍이 몽고에 갈 때 뇌물을 받고 사람 17명을 데리고 가서 장사를 많이 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17명에게서는 은병 170개, 진사 700근을 몰수하고 또 그들을 모두 섬에 귀양보냈으며 주영량에게서는 은 9근, 정정보에게서는 은 7근을 벌금으로 받아 내었다(3-38).

자료 91에서 어항사가 처녀 6명을 데리고 간 것은 고려에서 마땅히 바치는 공물의 하나라고 보겠으나 거문고와 비파는 고려의 어떤 개인의 선물이거나 아니면 어항사가 고국의 악기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료 92는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던 동진이 각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같이 서로 물품을 사고팔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몽고의 치하에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필요성은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각장에서의 공인된 사교역은 진행되었을 것이다. 자료 93은 원나라 상인들이 고려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원나라 세무관리가 고려에까지 와서 원나라 상인에 세금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겠다. 자료 94는 원나라 상인 중 관청에서 돈을 빌려서 국제교역을 하다가 이익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를 입증하는 자료다. 그리고 자료 95는 몽고에 가는 고려의 사신이 뇌물을 받고 일반상인을 사절단속에 동행하도록 하여 교역에 종사하도록 방조한 것을 응징한 예이다. 이 예는 고려와 몽고와의 초기 교역에서 일어난 예의 하나이나 그 후로도 계속 되었을 것으로 보며 그 규모도 늘어났을 것이다.

이들 자료는 다같이 사교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는 있으나, 그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을 닫고 있다. 다만 중국측의 시문 등에서 언급된 고려의 상품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³⁷⁾

고려차, 화문석, 가산목, 흰 모시, 고려갓, 고려요에서 만들어진 분청의그릇, 석유리, 종려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모자와 신발

위의 물품중에는 공교역이나 공사교역에서 거래대상이었던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물품도 있다. 고려갓과 도기, 고려모자와 신발 등이 새롭게 나타난 물품들이다. 그러나 이런 물품들이 사교역의 주류상품이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이유는 이런 물품들이 몽고나 중원에서 일반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성을 갖는 물품이 보다 대량으로 사교역에서 거래되었을 것으로 본다.

37) 장동익 [4], 112~121쪽.

6. 명과의 교역

1) 명과의 관계

주원장이 명을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1368년 1월이다. 주원장은 홍건군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 해인 1352년에 홍건군의 일단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그는 1364년에 자립해 오왕이 되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중원을 휩쓸어 명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고려사』에는 “1369년 4월 명나라 황제가 부보랑 설사를 파견하여 황제의 친서와 사, 라, 단, 합계 40필을 보내 왔다. …설사는 지난 해 11월에 금릉을 출발하여…이 때에야 왔던 것이다.”(4-145~146)라는 기사로서 명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있다. 이 때부터 1392년까지 2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사절을 교환하고 조공을 바치며 중원의 문물을 도입하려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려는 원과 명을 상대로 이중외교를 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두 나라로부터 다같이 신의 없는 나라로 질타받기도 하였다.

고려는 명으로부터 황제의 친서를 받고 바로 1369년 5월에 사절을 보내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고 “…영원히 당신에게…정성을 바치고자 한다.”는 표문을 올렸다(4-147). 따라서, 명에 보내는 정기적인 사절로는 황제의 생일 축하사, 새해 축하사, 천추절 축하사가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황태자의 생일 축하사절도 있었다. 비정기적인 사절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같았다. 그러나 명에서 고려에 보내는 정기적인 사절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명과의 공교역

고려가 명에 바치는 공물의 양은 언제 어떤 식으로 정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해져 있었다. 즉, 자료 96과 자료 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100근, 은 1만 량, 말 1,000필, 포 1만 필이 세공량이었다. 공물의 정량이 정해지기 이전에는 고려에서 주로 말을 예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즉, 1372년 3월과 11월에

사신을 보내면서 각각 말을 바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같은 해 7월에는 토산물을 바치기도 하였다.

<자료 96> 1379. 3. 심덕부와 김보생이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명나라 황제가 ...전왕이 언약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말 1,000필을 공납하되 집정대신이 같이 올 것이요 명년부터는 금 100근과 은 1만 량, 양마 100필, 세포 1만 필씩을 매년 상례로 바칠 것이다(4-295).

<자료 97> 1382. 4. 문화찬성사 김유, 문화평의 홍상재, 지밀직 김보생, 동지밀직 정몽주, 밀직부사 이해, 전공환서 배행검들을 명나라에 보내 세공으로 황금 100근, 은 1만 량, 포 1만 필, 말 1,000필을 보내었다(4-331).

<자료 98> 1384. 10. 연산군 이원평을 명나라에 보내어 세공을 바쳤다. 명나라 예부에 보낸 공문에 이르기를 “5년간 세공으로 바칠 금 500근 중에 이번 바치는 것이 금 96근 14량이니 미진된 403근 2량은 말 129필로 대납하며, 은 5만 량 중에서 이번 바치는 것이 1만 9,000량이니 미진된 3만 1,000량은 말 104필로 대납하며, 포 5만 필 중에서 이번 에 모시 4,300필과 검은 삼베 2만 4,400필과 흰 마관포 2만 1,300필을 바치며, 말 5,000필 중에서 이미 보낸 4,000필은 요동도사가 감수 하였으므로 이제 1,000필을 보낸다.”라고 하였다(4-371).

<자료 99> 1392. 2. 영북군 왕격과 찬성사 권중화를 명나라에 보냈다. 이 때에 환자 5명과 누른모시 및 검은 삼베 각 50필씩, 그리고 인삼 60근, 표피 10장, 안장 4벌, 말 10필을 바쳤다(4-558).

공물로 바치는 말이 자료 96에서는 양마 100필로 되어 있고, 자료 97에서는 말 1,000필로 되어 있는데 자료 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공말은 1,000필이 옳다고

보겠다. 자료 96에서 볼 때 이러한 세공액은 1379년 이전에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세공액은 고려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벽찬 것이어서 1379년, 1380년, 1381년 계속해서 세공을 바쳤으나 정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거부당하였다. 자료 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물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 은의 양을 말로써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고려는 1386년 2월에 정몽주를 명나라에 보내 세공을 경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4-398). 명나라에서 그해 7월에 돌아온 정몽주가 가져온 명나라 예부에서 보낸 자문에 “세공은 그만 삭제하고 3년에 한 번씩 우량종마 5필씩만 조공하라.”(4-406)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말을 수천 필씩 바쳤었다. 즉, 1387년에도 5차에 걸쳐 5,000필을 보냈고, 1391년에는 2차에 걸쳐 4,000필을 바쳤으며, 1392년에도 5월까지 2차에 걸쳐 3,000필을 바쳤었다.

일반사절을 보낼 경우에도 예물을 가지고 갔던 바, 1373년 6월에 정원비를 보내어 신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말을 바치고 있다(4-210). 자료 99에서는 모시베와 삼베, 인삼과 표피 그리고 말과 안장을 보내고 있다. 고려는 이와 같은 공교역 A형에서 명나라에 보낸 품목은 금, 은, 포, 인삼, 말, 나귀, 안장표피 등이었다.

한편 명나라에서는 1370년 4월 고려왕을 책봉하는 책봉사를 보내면서 금인 1개와 금수용단 10필을 보내고 태비에게 금단, 색단, 선라, 사 각 4필을 주고, 왕비에게도 이와 같이 주었으며, 상국 신돈과 시중 이춘부 및 이인임에게 색단과 선라 각 4필씩, 사각 4필씩을 주었다(4-157). 이 외에 1369년 4월에 사, 라, 단 40필을 보냈고, 6월에 사, 라 각 6필씩을 보낸 바 있었다. 이들은 모두 A형 교역이다. 즉, 명나라의 예물은 금인과 각종 비단뿐이었다.

국가간의 C형 거래는 1386년 11월에 명에서 주단 1만 필과 면포 4만 필을 가지고 고려에서 말 5,000필을 사겠다는 제의와, 1391년 4월에 고려에서 말 1만 필을 요동에 보내고 값은 명나라 서울에서 받으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러한 제의와 공문이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실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명에서 고려에 보낸 공교역품은 각종 비단뿐이었다.

3) 명과의 공사교역

명나라 사신에게 고려 조정에서 사적으로 예물을 준 경우는 3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첫 번째는 1385년 2월 요동도사가 파견한 정여에게 금 50량을 뇌물로 주고 수원 3명에게는 각각 은 50량씩 주었다(4-378). 두 번째로 1385년 10월 (명나라 사신) 장부 등에게 의복, 안장, 말, 은, 모시베, 베 등을 선물로 주었으나…궁이 거절하고(4-391~392) 받지 않았다는 것과 세 번째로 1391년 6월 “한룡(명나라 사신) 등이 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작별하니 왕이 그에게 검은 삼베, 흰 모시베 각 30필씩을 주었다.”, “한룡 등이 돌아가니 왕과 세자 그리고 도당이 모두 삼베와 모시베와 세포를 선물하였고 의복과 말, 안장을 주었으나 은을 주지 않은 것을 불만하게 여겨서…은 각 50량씩과 그 친척들에게 줄 관리임명장 100통을 주었다.”(4-640)이다. 그리고 명나라는 고려에 와서 농우를 사간 것이 두 차례(1385. 4, 1387. 9) 기록되어 있다.

세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E형 공사교역으로 고려측에서는 금, 은, 삼베, 모시베, 말, 농우, 안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4) 명과의 사교역

명이 요동지역을 차지하게 되자 고려는 그들과도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1384년 10월에는 명나라측에서 압록강을 건너와서 교역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려에서는 의주에 체류하는 명나라 사람에게 교역을 허락하였으나 금과 은 그리고 소와 말은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었다. 또한 명나라에서도 몰래 교역함은 금지하나 허가를 받고 교역활동을 한다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많은 사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1391년 5월 량사 허용 등이 왕에게 글을 올리기를 “…지금 무뢰배들이 모두 외국의 상품을 사다가 돈벌이를 하느라고 본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몰래 가고 몰래 돌아오는 자들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일반관리들에게 사, 라, 단자를 입지 못하게 하고, 검소

한 기품을 숭상하여 그들과의 상업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바랍니다.”(4-536) 하는 정도로 금과 은을 가지고 중국의 비단을 사들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노생을 서북면 찰방별감으로 임명하여 중국과의 통상자를 금지하였다. 그 전에 상인들이 말, 소, 금, 은, 모시베, 삼베 등을 가지고 요동과 심양에 가서 파는 자가 대단히 많았다. 나라에서 그것을 금하기는 하였으나 명백한 명령이 없었고, 국경지방의 관리들도 엄하게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자가 도로에 연락부절하였다.”(4-536)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말경의 북방교역에서는 금과 은, 말과 소 그리고 모시베와 삼베 등이 수출품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교역에서 다른 어떤 물품이 교역되고 있었는지 그 전모는 분명하지 않다.

IV. 결 론

고려는 475년간 왕국을 이어 오는 과정에서 거란과 요, 여진과 금, 몽고와 원 그리고 명의 무력침공과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존과 자립을 염원하고 선진문물의 섭취에 힘썼던 것이다. 5대의 여러 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에 스스로 신하됨을 자칭하여 작은 나라의 관례를 따르려고 하였던 것은 중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드리려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고려가 이들에 맹종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니 거란의 침입을 받고 송나라에 대하여 군사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단교를 선언할 만큼 기개를 보인 때도 있었던 것이다(1-173). 교역형태를 크게 공교역, 공사교역, 사교역으로 나누고 보다 세분하면 공교역은 국가간의 공물거래(A형), 왕실간의 예물거래(B형), 국가간의 상거래(C형)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공사교역은 갑국 정부와 을국 시장과의 거래(D형), 갑국 정부와 을국 특정 개인 간의 거래(E형), 갑국 정부와 을국 상인간의 준조세적인 거래(F형)로, 사교역은 갑국 관리와 을국 시장과의 거래(G형), 갑국 개인과 을국 개인 간의 거래(H형)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러나 자료가 너무

적어서 이러한 분류가 의미 없게 되어 크게 공교역, 공사교역, 사교역품으로만 대비하였다.

여기서 분석한 5대, 송, 거란(요), 여진(금), 몽고(원) 그리고 명과의 교역품목을 <표 13>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여진(금)과의 교역 내용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적었고, 명과의 교역품목은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까닭은 명과의 교역기간이 짧았고, 고려는 말기의 혼란기이고 명은 초창기라는 특수성 그리고 원과 명은 적대국을 동시에 섬겨야 하였던 고려의 이중성 때문에 정상적 교역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교역품을 크게 왕실 용품류, 금은제품류, 무구류, 옷감류, 먹거리류, 기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 ① 금은제품을 제외한 왕실 용품류는 5대와 송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준비하던 것이 여진, 몽고 그리고 명에 대하여는 금은제품류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 ② 금은제품류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더 다양해지고, 보다 정교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금은 산출량의 증가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볼 수 있다.
- ③ 무구류는 5대와 송과의 관계에서는 비중이 컸던 것이 점차 비중도 낮아지고 가짓수도 단순화되어 갔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무구류가 단순한 예물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교역품의 구성이 예물 중심에서 실질가치를 중시하는 품조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④ 옷감류에서 모시베와 삼베는 고려의 전기간을 통하여 예물로서 실용공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명주베와 여러 가지 비단이 예물로서 상대하는 나라에 따라 사용되었었다고 보겠다.
- ⑤ 먹거리류에서는 인삼이 고려 전기간을 통하여 중요 공물의 지위를 점하였으며, 쌀은 거란과 여진, 즉 만주지방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차도 역시 이 두 나라에 대하여 수출되었었다. 향유(참기름)와 잣은 5대와 송과의 교역품에만 들어 있다. 몽고에는 미역과 건어, 탐라쇠고기가 한동안

수출되었다.

- ⑥ 기타류에서 5대에는 가위, 칼, 불낫 등의 철제품과 머리털, 동, 서적 등이 수출되었고, 송에는 동그릇, 놋그릇, 유황, 약제, 모피, 종이와 먹이 수출되었으며, 거란에는 동그릇, 등석, 등나무그릇, 종이, 먹이 수출되었다. 몽고에는 철, 놋쇠, 각종 동물가죽, 매, 황칠, 종이, 서적, 화문석, 그림, 그림부채 등이 수출되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종이와 먹이 공통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점과 몽고에 그림과 그림부채, 화문석 등 민간예술품이 예물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5대 국가에는 금은장식의 가위와 칼, 불낫 등이 수출되던 것이 몽고에는 그림, 그림부채, 화문석 등 예술품이 수출되었다는 점은 사회적 진보를 뜻한다고 보겠다.
- ⑦ 공사교역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적었기 때문에 <표 13>에서 일반적인 동향은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만 볼 때, 5대 국가에는 동, 송에는 은이 주요 공사교역품이었다. 여진(금)에 대하여는 금, 은, 은제품, 모시베, 명주베, 비단 등이 수출되었으며, 몽고에는 금, 은, 금은제품, 말, 말안장, 각종 옷감류, 각종 가죽류, 그림, 그림부채, 관대, 초은 등이 수출되었다. 명에 대해서는 금, 은, 말, 말안장, 모시베, 삼베, 농우 등이 수출되었다.
- ⑧ 사교역에 대한 자료도 공사교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제약성 때문에 어떤 경향을 찾아 낼 수는 없었다. 송에 대한 자료는 고려사나 송사를 떠나서 송의 외국 교역에 관한 행정자료가 비교적 정비되었었기 때문에 상세한 품목을 살필 수 있었다. 송의 선박과 상인이 그토록 많이 고려에 왕래하며 교역에 종사하였던 점과 역시 고려의 선박이 일찍부터 중국의 남부지방에 왕래하면서 교역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교역의 양은 공교역이나 공사교역을 크게 능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아쉽게도 역사서에는 그에 관한 자료가 태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 ⑨ 공교역품중 왕실 용품류와 금은제품류 그리고 무구류는 모두 왕실에 바치는 예물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일반 교역품의 성격은 적다고 보겠다. 이들 왕실간의 예물은 왕실 용품류와 무구류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

〈표 13〉 고려의 교역물품

| | | 5대 | 송 | 거관(요) | 여진(금) | 몽고(원) | 명 |
|------------------|-------------------|---|---|--|--|--|---------------------|
| 공 교 역 품 | 왕실 용품 류 | 도포감, 치마 감, 침대요, 방 석, 매방울, 안 석, 새매방울, 매띠 | 왕의 옷, 금요대, 안석, 모로 휘장, 병풍, 전대 | 복두, 어 의 | | | |
| | 금은 제품 류 | 은제향합, 은 제향로, 은그 릇 | 금, 은, 금주전자, 은주전자, 금대야, 은대야, 금그릇, 은 그릇 | 금, 금병, 은병, 금 그릇, 은 그릇, 금 제포두, 금사라 | 은 주 전 자, 은 그릇 | 금, 은, 금병, 금주전자, 은병, 은주전자, 금그릇, 은그릇, 금복자, 은복자 | 금, 은 |
| | 무구 류 | 갑옷, 투구, 은 장도, 검, 비 수, 다리싸개, 각궁, 화살, 활 전대, 화살통, 창, 말 | 금은장식 각종 칼, 각종 활, 각종 화 살, 금은장식 병기, 안장과 고삐 갖춘 말, 산마 | 금 장 식 안 장 과 고삐 갖 춘 말 | | 칼, 칼집, 안장, 말 | 안장, 말 |
| | 옷감 류 | 각종 모시베, 흰 모직, 마포, 중마포, 비단 | 모시베, 삼베, 생중 포, 비단, 능직, 생 평포, 복두사, 모자 사 | 사 저 포, 공 평 포, 면주, 세 포, 추포 | 세포, 저포, 광평포 | 각종 모시, 명주, 자라, 진자라, 사 | 모시베, 삼 베, 마관포 |
| | 먹거 리류 | 인삼, 향유, 잣 | 인삼, 향유, 잣 | 노 원 차, 인삼, 법 청주, 쌀 | 차, 쌀 | 인삼, 수유, 탐라쇠고기, 따오기고기, 포, 미역, 건 어 | 인삼 |
| | 기타 류 | 금은장식 작자, 금은장식 가위, 금은장식 각종 칼, 금은장식 불낫, 불집개, 수정, 머리털, 동, 서적 | 동그릇, 놋그릇, 유 황, 약재, 먹, 종이, 청서피, 수레 | 종이, 먹, 동 등석, 동 그릇, 등 나무그릇 | 의 복, 옥 띠, 구슬 | 철, 놋쇠, 각종 종이, 서 적, 그림부채, 그림, 화문 석, 그림부처, 수달피, 범 가죽, 표범 가죽, 기타 가죽, 황칠, 매, 목의, 쌀 | 표피 |
| 공사 교역품 | 동 | 은 | 의복 | 금, 은, 은그릇, 견주포, 비 단, 저 포, 의복 | 금, 은, 금그릇, 은그릇, 은병, 금주전자, 의복, 주 포, 저포, 비단, 능직, 말 다래, 말갈래, 말, 소, 금 장식 안장, 수달피, 범 가죽, 표범 가죽, 곰 죽, 그림부채, 그림, 관 대, 초은 | 금, 은, 말, 안 장, 모 시 베, 삼 베, 가 세 포, 의 복, 농우 | |
| 사교 역품 | 인삼, 동, 종 이, 서적 | 과실류, 약재류, 수공 품류, 옷감류, 문방구 류, 모피류, 기타 부 채, 그림, 칠 등 | ? | 쌀 | 악기, 고려차, 화문석, 흰 모시베, 청자, 석유리, 등 나무제품, 종려나무제품 | 금, 은, 말, 소, 모시베, 삼베 | |

고 금은제품류의 비중이 높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실용성과 범용성 그리고 실질가치를 중시하는 풍조로 변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금은제품은 가짓수가 늘어나고 보다 섬세한 금은세공기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보겠다.

- ⑩ 공교역품중 옷감류, 먹거리류 그리고 기타류는 예물의 성격을 지니는 품목도 포함하지만 일반 교역품의 성격을 지니는 품목들이라 보겠다. 이들중 모시베와 삼베, 인삼 그리고 종이는 고려 전기간을 통하여 일관된 주요 수출품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⑪ 공사교역품과 사교역품을 종합해 보면 금, 은, 은제품, 모시베와 삼베 등이 비교적 일관성을 갖는 수출품이고, 쌀과 소가 북방지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려청자는 몽고와의 교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 ⑫ 위와 같이 볼 때 공교역면에서 실용성과 실질가치를 중시하는 풍조로 점차 바뀌어왔음을 살필 수 있었고, 금은제품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적 진보도 또한 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교역품의 성격을 갖는 부문에서는 모시베와 삼베 그리고 인삼이 시대와 나라의 차별없이 일반적 수출품이었고, 만주지역에 대하여는 쌀과 소가 역시 일관된 수출품목이었다. 따라서, 고려의 교역품 내용에서 볼 때 고려사회는 전래의 형식 중심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실질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하였고, 부분적인 면에서 기술수준 또한 꾸준히 향상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징표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만주지역 특히 북방인접지역에의 수출품이 중원지역에의 수출품과 다른 점은 주산업인 농업과 관련된 물자, 즉 소와 쌀이 수출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고려사회는 발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자료 21과 자료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71년의 예물에 비해 1080년의 예물이 품목과 수량에서 진일보하였음을 보았다. 그러나 11세기의 교역품의 내용과 14세기의 교역품의 내용면에서 볼 때 큰 발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원인은 고려의 생산력 발전과 교역상대국의 경제·사회수준이라는 쌍방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선

진국에는 첨단고급품을 수출하고, 개도국에는 중간수준의 값싼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역상대국의 수준에 따라 교역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교역품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국내 생활양상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대외교역품의 변화를 보완함으로써 고려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1. 고선지(김광주 편역), 『중국의 역사』, 8.
2. 김신, 『무역사』, 도서출판 석정, 1991.
3. 장동익, 『고려후기 외교사연구』, 일조각, 1994.
4. _____, 『원대려사 자료집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 _____, 『송대려사 자료집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6. 조효숙, “고려시대의 직조공과 직물생산의 실태”, 『국사관논총』, 55.
7. 황관중, “송대무역의 문물교류”, 『진단학보』, 71/72, 1991.
8.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 조선전』(국역), 1986.
9. 『고려사』(북역), 신서원, 1991.